

2021.
APR + MAY + JUN

가 나 다 라

LAW SCHOOL

미 래 의 희 망 로 스 쿨



- XNU 강원대학교
- 건국대학교
- 경북대학교
- 경희대학교
- 고려대학교
- 동아대학교
- 부산대학교
- 서강대학교
- 서울대학교
- 서울시립대학교
- 성균관대학교
- 아주대학교
- 연세대학교
- 영남대학교
- 원광대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 인하대학교
- 전남대학교
- 전북대학교
- 제주대학교
- CAU 중앙대학교
- 충남대학교
- 충북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LAW SCHOOLS

진정한 삶은 오직 현재에 있다.
 있었던 것은 이미 없는 것이고,
 미래에 올 것도
 지금은 없는 것이고,
 지금 있는 것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온 마음을 쏟아라.

-톨스토이 (Leo Tolstoy, 1828-1910)



Contents



2021. apr + may + jun

발행일 2021년 4월
 등록번호 2289-0262
 발행인 한기정 이사장
 편집-진행 김명기 국장, 박소희 대리
 발행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02-752-2037)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34, 5층
 디자인 (주)그리고나무(02-2268-2592)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길 51
 인쇄 삼화인쇄(주)

<로스쿨 창>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로스쿨 창>에 게재되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004 **special report 1**
 변호사시험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심포지엄
- 010 **special report 2**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한 건의서
- 013 **book**
- 014 **power interview**
 권진성 변호사
- 018 **hot issue**
- 020 **letter from**
 배연관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 024 **real story**
- 034 **contest 1**
 제12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 040 **contest 2**
 제13회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완전 정복 가이드
- 042 **happy lawschool**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2기 김원오
- 046 **opinion**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한기정 이사장
 광주과학기술원 김건우 교수
 한국경제신문 안효주 기자
- 054 **health mentoring**
- 056 **art sonata**
- 058 **law toon**
- 060 **culture**
- 062 **statistics**
- 064 **akls news**
- 066 **out campus**
- 067 **quiz**

1

지난 4월 12일(월)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변호사시험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4월 말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변호사시험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호사시험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심포지엄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개회사>

한기정 이사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오늘 심포지엄은 변호사시험 제도의 공과 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시험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로드맵을 그리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법전문대학원협의회도 변호사시험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사>

송기현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우리 법조인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넘어,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의사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심포지엄의 토론과 발표를 통해 법전문-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국민의 기본권과 법익이 증진되는 초석이 되길 희망합니다.”

<주제발표>

천경훈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12년의 운영 결과 법전문 교육을 좌우하는 압도적인 변수는 교원, 교재, 교과과정이 아니라 변호사시험이고, 이는 인성적, 윤리적, 가치관적 측면 뿐 아니라 전문지식적 측면에서도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현행 변호사시험의 성과>

- 평가결과가 상당히 정확하고, 특히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학업 성과가 상당히 높은 동조 현상을 보인다는 점은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의 장점이다.
- 긍정적 영향: 압축적 교육과정과 압박적 변호사시험의 존재로 인해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기본적인 법 지식을 상당히 신속하게 익히게 된다.

<현행 변호사시험의 문제점>

① 출제 방식의 한계

문제은행이 있지만 그 양, 품질, 비밀이 충분히 관리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 문제은행에 크게 의지할 경우 제10회 공법 기록형과 같은 공정성 문제가 우려되고, 문제은행에 의지하지 않고 합숙 후에 창작할 경우 시간적 제약에 따라 결국 판결요지 의존형 문제가 되기 쉽다.

② 지나치게 판례에 경도된 출제

현행 변호사시험에서는 판결요지를 그대로 묻는 유형의 문제가 선택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사례형/기록형도 판결요지를 기억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공부 시간의 대부분을 “판례(실제로는 판결요지)”를 외우는 데에 보내고 있다.

③ 피상적 암기 위주의 출제

현행 변호사시험은 학생들에게 법적인 사고를 연마하기보다는 판결요지를 읽고 넓게 암기해서 아는 척 답안지에 표출하라는 메시지를 매우 강력하게 보내고 있다.

④ 현행 기록형 시험의 한계

상당수 기록형 문제는 사례형으로 평가해도 충분한 법적지식을 묻는 데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존댓말로 쓰는 사례형”). 수많은 실제법, 절차법적 쟁점을 짧은 분량에 집어넣어서 실제 동일 분량의 사건 기록에 비하여 훨씬 법리적 쟁점이 많은 “인위적 쟁점과 다형” 기록의 형태를 띠고 있다.

⑤ 시험방식의 문제

사례형, 기록형의 방대한 답안을 극히 짧은 시간 내에 “손으로” 작성하고, 그 손 글씨를 읽고 채점해야 하므로, 응시자와 채점자 모두가 무용한 스트레스와 비효율에 시달리고 있다.

⑥ 교육현장에서의 부정적 영향

피상적인 암기, 판례 요지의 절대시, 맹목적인 기재 암기, 수험과목 편중 등은 장기적으로 졸업생들의 실무 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지 우려된다.



⑦ 송무 집중 현상의 강화

법학교육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의 시야를 “국내 송무”로 국한시키는 것은 법률가의 성장 가능성에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것으로 우려된다.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방안>

① 출제 담당 기구의 구성: 시험을 목전에 둔 시기 뿐 아니라 평소에도 출제의 방향과 문제의 구성을 연구하고 문제 풀을 형성 및 관리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위해서는 예산 및 인력의 확충과 전국 법전문 교수와 법조실무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수반되어야 한다.

② 출제 방식의 변화

일반	선택형	사례형
- 암기요구량 축소 - 기본판례 활용 - 문제풀의 구성 및 관리 - 중요 쟁점에 대한 반복 출제	- 새로운 문제 유형 개발 - 지식이 아닌 추론을 묻는 문제 확대	- 쟁점 및 소문항 숫자 축소 - 쟁점발견형으로의 재 전환 - 무리한 융합출제 지양
기록형	이른바 변별력의 문제	
- 비중과 형식의 재검토 - 쟁점 간소화 - 변호사실무에 부합하는 서면작성	기본적인 사례에서 기본적인 쟁점을 묻더라도 쟁점발견형을 취하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③ 시험 방식의 개선

- CBT 도입 : 사례형 및 기록형은 컴퓨터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CBT: Computer-Based Test) 손 글씨 작성에 따른 수험생과 채점자의 무용한 수고를 덜어줄 필요가 있다.
- 선택과목 이수제: 선택과목에 대해 별도로 사례형 시험을 치르는 것보다는 일정한 학점의 이수를 요구하는 것이 고사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학교교육의 정상화에도 더 도움이 될 것이다.



<토론①>

이동형 원장(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어느 정도 기초적인 지식만 갖고 있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보지는 않는다. 전문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과 원리 외에 예외, 예외의 예외,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적용된 사례까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변호사시험에서 세부적인 판례까지 묻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 판례의 암기 등의 문제 외에도 발제자께서 지적하신 문제, 예를 들어서 변호사시험과목 일변도의 학습편향 같은 문제는,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이 3년이라는 너무 짧은 기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에도 기인하지 않나 생각한다.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을 4년제로 운영하는 것을 깊이 있게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토론②>

정진아 교수(사법연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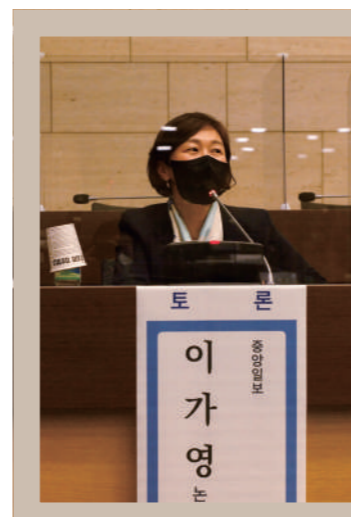
- 천경훈 교수님께서 개선방안으로 제안해 주신 CBT의 도입에 적극 찬성이다.
- 선택형(객관식) 시험을 사례형/기록형과 분리하여 1~2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실시한다면, 학생들로서는 시험부담을 조금 덜 수 있고, 법조인으로서의 업무와 상관관계가 높은 사례형/기록형 시험대비도 보다 더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법조인으로서 수행하는 업무 중 어느 직역에서건 원활한 소통능력은 중요한 업무능력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변호사시험의 마지막 과정에서 구술시험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토론③>

김민규 교육이사(대한변호사협회)

-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0년간 신규변호사들에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바, 이를 로스쿨 교육으로 편입시키는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로스쿨에 교수를 파견하여 변호사실무(1,2)라는 과목으로 개설하는 것이다.
- 로스쿨을 3년 6개월 내지 4년제로 개편하고 변호사시험은 1학년에 법조윤리(P/F), 2학년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에 선택형(P/F)을 응시하고 70% 미만 득점 시 유급하여 로스쿨 교육을 통하여 재도전, 3학년 마치고 사례형과 기록형 응시,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후 부담 없는 상태에서 실무수습 및 세무, 노동 등 자유롭고 실무적인 특성화 교육을 하는 것도 제안한다.



<토론④>

이가영 논설위원(중앙일보)

- 무엇보다 법전문이라는 것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선 변호사시험제도와 변시의 변화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 법전문은 변호사시험 준비를 위한 입시 기관이거나 학원이 아니다. 법전문이 교육기관으로서의 당초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변시의 합격생 제한을 풀어야 한다. 상대 평가가 아니라 절대 평가, 즉 어느 정도 기준을 통과한 사람이라면 변호사 자격증을 줘야 한다.
- 변호사시험은 제대로 된 법률가를 길러내는 게 아니라 어려운 시험에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만들어진 각종 양식이 존재한다. 수천개의 사례를 암기, 이른바 달달달달 외워야 잘 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냥 외우기만 할거면 변시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 토론 5 >

이범준 기자(경향신문)

- Q1) 일본에서는 독학자인 예비시험 합격자들이 유명대학 로스쿨 졸업생보다 취업시장에서 선호된다. 현재 법률시장이 교양과 소양보다는 여전히 법률지식을 원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 Q2) 과거 사법연수원 시절에도 사내 변호사, 자문 변호사가 되려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은 법과대학, 사법시험, 연수원까지 거친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송무 변호사 이외의 직역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가 어려웠다. 지금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송무 이외 분야를 교육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 Q3) 교양과 소양을 쌓는 법학교육이 되려면 교육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 토론 6 >

이용우 변호사(참여연대)

-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시험은 과거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에서의 평가가 혼용되어 있다. 이는 3년 동안의 법전원 교육과정을 양과 질에 있어서 지나치게 가혹하게 평가하는 측면이 있다. 시험 내용 또한 지나치게 판례 결론 위주의 테스트이고, 다양한 논거나 이론을 확인하지 않으며 불필요하고 비현실적인 논점과 기록 등을 요구한다.
-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자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한다. 변호사로서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제도의 마련과 운영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변호사시험 자체의 개선만이 아니라, '교육을 통한 양성'이라는 법전원 도입 취지를 담보할 수 있는 장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 토론 7 >

강술이 학생대표(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법조 직역이 새롭게 확장될 수 있는 분야를 제시하는 전문화 과목들이 신설되어야 한다.
- 변호사시험 선택형 시험의 경우, 법조윤리 시험처럼 변호사시험과 그 시험 시기를 달리하여야 한다. 사례형 시험의 경우, 문제의 문항 수를 줄이고, 충분히 검토하고 논증할 수 있는 시험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선택형 시험의 경우 변호사시험에서 제외하고, 선택과목에 대한 학점이수제로 변경하는 방식에 동의한다.
- 변호사시험 출제 및 수험장을 엄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어도 수능에 준하는 시험 문제의 보안 유지, 각 고사장별 형평성 유지, 시험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매뉴얼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합격 인원을 미리 공표하여 수험생들이 예측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 토론 8 >

이경주 회장(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을 실무와 이론의 가교 역할을 하는 정도로 현실화하고 졸업 후 변호사 연수제도를 실질화하는 방안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난이도 조정 및 변사관리 업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경험(LEET, 모의시험)과 연구개발 능력(모의시험 문항개발 등)이 있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이제는 변호사시험 출제업무를 법무부로부터 위탁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시험방식을 개선해야 하며 그 한 방안으로 CBT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20여년 전부터 변호사시험 및 학교시험에 컨닝 방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노트북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기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 다만 오작동에 따른 위험 및 재원 마련 문제가 남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법무부와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발표시기도 조정되어야 한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로스쿨, 법무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모습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안효질 원장이 사회를 맡아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심포지엄의 사회를 맡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안효질 원장

※ 심포지엄 자료집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2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둔 지난 3월 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응시자 대비 60% 이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법무부와 교육부에 제출하였다.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한 건의서

■ 건의의 배경

- 변호사시험법 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에 따르면 법전원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본 협의회 의견에 들어야 합니다.
- 이에 본 협의회는 지난 10년간 변호사 시험의 현황, 그것이 법학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중히 검토한 뒤 아래와 같은 의견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 건의의 요지

- 이번 제10회 변호사 시험에서는 응시자 대비 60% 이상의 합격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 현재 50%대의 합격률 하에서 대부분의 학생은 변호사시험 준비에만 천착하고 있으며,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전원 제도가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법전원의 다양한 커리큘럼을 통한 경쟁력을 갖춘 법률가 양성은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 건의의 근거

1. 변호사시험의 현황: 합격률 급락과 불합격자 대폭 증가

- 변호사시험 실시 초기에는 법학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대부분의 응시자가 시험에 합격하여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전원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였으나, 점차 합격률이 떨어지면서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불합격자 수가 제1회 214명에서 제9회 1,548명으로 7.2배 증가하였고, 오탈자(5년 5회 응시제한에 걸린 졸업생) 증가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 오탈자 1기 159명, 2기 218명, 3기 202명, 4기 194명, 5기 118명, 총 891명
- 합격점수도 제1회 720.46점에서 제9회 900.29점으로 대폭(179.83점) 상승하여, 기수 간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위: 명, 점)

구분	제1회 (2012)	제2회 (2013)	제3회 (2014)	제4회 (2015)	제5회 (2016)	제6회 (2017)	제7회 (2018)	제8회 (2019)	제9회 (2020)
응시자	1,665	2,046	2,292	2,561	2,864	3,110	3,240	3,330	3,316
합격자	1,451	1,538	1,550	1,565	1,581	1,600	1,599	1,691	1,768
(합격률)	(87.15%)	(75.17%)	(67.63%)	(61.11%)	(55.20%)	(51.45%)	(49.35%)	(50.78%)	(53.32%)
불합격자	214	508	742	996	1,283	1,510	1,641	1,639	1,548
합격점수	720.46	762.03	793.70	838.50	862.37	889.91	881.90	905.55	900.29

2. 변호사시험의 영향: 법학 교육의 파행

- (시험에 의한 선발제도로 전략) 합격률이 급락하면서 학생들의 불안감이 가중되어, 법전원 교육, 변호사시험, 실무연수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학원화 경향) 대다수 학생들이 변호사시험 과목만을 수강함에 따라 다양한 특성화·전문화 선택과목 강의가 폐지되고, 학교는 법학의 다양성을 상실해가고 있으며, 학생들은 단편적인 수험용 지식 암기와 수험용 기술 습득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 특성화 전문선택과목 폐강 비율 17.63%(2015) → 29.84%(2019)
- (진정한 실무능력 함양 기회의 박탈) 시험 준비에 매몰되다 보니 리걸클리닉, 모의재판, 실무수습, 자율적 학회 활동, 세미나 등의 적극적 활동이 유명무실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래의 법률가들에게 요구되는 정보획득, 의사소통, 비판적 사고, 전략적 사고, 프로젝트 운영 등의 능력을 함양할 기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 (국제경쟁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 목적의 퇴색) 시험 준비에 매몰되다 보니 외국어강의 교과목, 해외연계 교육프로그램 등도 실효성이 하락하여 다양한 직역과 국제무대에서 경쟁력 있게 활동할 법률전문가 양성이 어렵습니다.

3. 법률가 배출 통제: 법전원을 통한 법률가 양성 취지 퇴색

- (원래의 구상) 법전원 체제를 통한 법률가 양성에 대한 원래의 모델은 아래 그림과 같이 ①교육부(법학교육위원회)에 의한 엄격한 설치인가와 매년 이행점검 실시, ②대한변협(법전원 평가위원회)에 의한 정기적 평가, ③법무부(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 의한 변호사시험 관리 및 합격자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설치·입학·교육 ↓	교육부 법학교육 위원회	<p><엄격한 설치인가, 매년 이행점검 실시, 취약 계층 선발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행점검: 5개 영역, 13개 항목(법정 9개, 정책 4개) 장학금 30% 이상 지급, 등록금 의존율 55% 미만 특별전형 5% → 7% 확대, 지역균형인재 10%, 20% 이상 선발 <p><법전문 입학전형 투명성 강화, 법교육 질향상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 LEET 응시 11,154명, 법전문 경쟁률 4.88:1 → 정량지표강화 등 엄정한 학사관리 및 졸업시험 유지('19학년도 89명 유급, 124명 졸업 탈락) 법실무교육 강의지원 내실화, 변호사시험모의시험 연 3회 실시 기본 7개 과목 표준판례 선정 제공
인증 평가 ↓	대한변협 법전문 평가위원회	<p><25개 법전문 평가인증, 법전문 제도 성공적 안착 총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교원, 교육과정, 교육환경, 교육성과 5개 영역, 18개 항목, 159개 요소 엄정 평가 법전문법 의거 자체평가, 본평가 실시 및 인증
법조인 배출 ↓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p><변시 선발시험 운영, 합격인원 통제 / 변시낭인 양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격률 제1회 87.15% → 제9회 53.32% 급락 (응시자 수 3,000명 이상 유지로 오탈인원 폭증, 현재 891명, 제10회 이후 1,000명 초과, 변시낭인 문제 심각) 법 도입 취지 퇴색,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시급

○ (제도의 왜곡) 변호사시험이 법조인 배출 통제를 위한 선발시험이 되면, 위 제도에서 상정한 교육 모델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되고, 법학교육위원회와 법전문 평가위원회의 평가는 개별 법전문에 재정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참고1] 합격률 통계 분석

- (실제 입학인원 대비 초시 합격률) 1회: 72.55% / 8회: 52.53% / 9회: 55.15% (1회 대비 17.40% 하락)
- (합격자 수) 1회: 1,451명 / 8회: 1,691명 / 9회: 1,768명 (전차 대비 77명 증가)
- (응시자 수) 7회: 3,240명 / 8회: 3,330명 / 9회: 3,316명 / 10회: 3,156명 (전차 대비 160명 감소)

[참고2] 언론사 기사자료

- 로스쿨 재학생 5번째 자살, 무엇이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나('19.11.07, 법률신문)
(매년 낮아지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거기 따른 과잉 경쟁이 이유)
- 변호사시험 평생 못보는 '로스쿨 오탈자' 올해 213명 늘었다('20.05.26, 비즈한국)
(졸업 5년 내 5회 응시로 제한, 누적 891명...법무부 "신규 오탈자 매년 200여 명 추정")
※ (오탈자) 1기 159명, 2기 218명, 3기 202명, 4기 194명, 5기 118명, 총 891명



변호사시험 자격시험을 위한 표준판례연구 5종 출간 헌법, 행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교육 및 시험용 표준판례 선정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물로 판례집을 출간하였다. 지난해 발간된 민법, 형법 표준판례연구 2종에 이어, 헌법, 행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총 5종이 발간되었다. 표준판례연구 보고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유투법

현직 미디어 업계 변호사가 알려주는 유투버를 위한 법 안내서

1인 미디어 전성시대에 유투브의 파급력은 날로 커져가고 있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유투브 채널을 개설해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동안 수많은 법 안내서는 있었지만, 유투버를 위한 법 안내서는 없었다. 고려대학교 언론학부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과정을 수료한 신상진 변호사가 최근 펴낸 <유투법>은 그런 의미에서 유투버들을 위한 법률 지침서인 셈이다. <유투법>에는 유투버가 알아야 할 상황과 실제 사례 등을 비롯해 유투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내용 114개가 Q&A 형식으로 담겨있다.



저 자	신상진
출 판 사	이담북스
판매가격	16,000원
판 매 처	전국 오프라인 및 온라인 서점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오십이 넘는 아들은 팔순을 훌쩍 넘긴 노모에게 가장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알렸다. 고시 공부를 시작한지 28년째 되던 해였다.

54세에 시작된 인생 2막

권진성 변호사

어린 시절 꿈도 법조인이었나?

고등학교 시절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선생님이 꿈이었다. 초등학교를 지역을 달리하며 6번 전학을 다니면서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았는데, 그때마다 선생님께 의지하면서 커서 좋은 선생님이 되고자 꿈을 키웠다. 하지만 부산교육대학에 입학할 수 있을 정도의 학력고사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고민하던 차에 친형님이 법대 입학을 추천했고, 그래서 법대에 입학했다.

법대에 입학한 후 본격적으로 고시를 준비한 것인가?

1984년 법대에 입학했을 당시 고시에 합격한 선배들의 오리엔테이션에 우연히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처음으로 고시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다. 그날 어머니께 객기를 부리며

고시 합격을 하겠다고 선언했고, 어머니께서는 열심히 해보라고 하셨다(웃음). 하지만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기 목적 없이 막연한 생각일 뿐이었고, 그러던 중 80년대의 정치적 혼란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대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사기업에 취업할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 고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젊은 청년의 눈에 보인 부패한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고 싶었고, 2년 안에 빨리 끝낼 수 있다는 생각에 좋아하는 과목들로 구성된 행정고등고시 검찰사무관 직렬을 준비한 것이 고시의 기나긴 터널로 들어선 계기가 되었다.

꽤 오랜 시간 고시 공부를 했다고 알고 있다. 고시 공부는 총 몇 년간 한 것인가?

고시 공부를 본격적으로 준비한 것은 대학교를 졸업하던 1992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인 2015년까지이니, 기간으로 치면 22년 정도다. 고시는 1차든 2차든 매년 응시했고(행정고등고시, 법원행정고등고시, 사법시험 포함), 행시 1차 두 번, 법원행시 1차 한 번, 사시 1차 세 번으로 1차는 총 6번 합격했고, 2차는 12번 응시했다. 2015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후 2020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을 때까지를 고시 공부 기간으로 친다면 약 28년 만에 고시생의 신분에서 벗어난 것이다.



사진출처: 조선일보 2020년 12월 26일자 “변호사 합격증을 받았을 때 나는 경비원이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 매우 긴 시간이다(웃음).

포기는 없었다. 고시 합격이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고시보다 더 쉬운 길을 찾을 수도 없었다. 물론 이 길 외에도 여러 다른 길이 있었지만, 그 다른 길 위에서 내가 더 행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었다. 무엇보다도 고생한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고,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었다. 어머니는 내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2개월 만에 돌아가셨다.

로스쿨 입학은 언제 결심한 것인가?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모교인 동아대학교 경비원을 하며 가족 생활비를 벌고 있었다. 함께 고시 공부를 했던 대학 후배들은 모두 법전원생이 되어 있었고(후배들 중 법전원생이 된 후배들이 있었다), 사법시험이 없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고시반(동아대 법대 지독료) 지도교수님께 로스쿨 진학 상담을 받았는데, 교수님께서도 좋은 생각이라고 하시며 격려해주셨다. 용기를 내서 2014년부터 로스쿨 진학 준비를 시작했다. 나처럼 고시공부를 오래도록 한 고시생에게 로스쿨이라는 제도는 행운이라고 생각한다(웃음).

22년간의 고시생활에 이어 또다시 3년간의 로스쿨 생활을 하겠다고 했을 때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나?

로스쿨 입학을 결심했을 때 아무래도 필요한 생활비나 등록금 걱정을 많이 했고, 가족들도 돈 문제를 많이 걱정했다. 하지만 돈을 벌면서 다닌다면 가족들 생활비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득했다.

실제로 로스쿨에 다니는 동안 야간에는 경비를 하면서 가족들 생활비를 충당했고, 장학금을 받고 다녀서 등록금 걱정은 없었다. 로스쿨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장학혜택을 받고 있고, 혹 장학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저리의 상환 조건이 좋은 생활비 대출을 받거나 시중 은행의 로스쿨생 우대 용자를 받을 수 있어서, 등록금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았다.

만학도의 로스쿨 생활은 어땠는지 궁금하다.

로스쿨에 입학하고 보니 동기들 중 최고령이었다(웃음). 로스쿨 학생들은 스펙, 출신지역, 출신학교도 다르고, 연령도 천차만별이다. 이렇게 다양한 실력자들과 동기생이 된다는 것이 흔치 않는 일이다 보니,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다. 물론 경비 일을 하면서 로스쿨을 다녀서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50대 중년이 2030 젊은이들과 함께 같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은 남다른 경험이고 행운이었다. 특히 최고령이다 보니 젊은 동기생들이 이런 저런 고민들이 있으면 상담을 요청해 와서, 본의 아니게 카운슬러가 됐다(웃음). 나보다 젊은 교수님의 강의를 듣게 될 때에는 교수님들이 좀 어렵게 느끼시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했지만, 교수님과 학생이라는 관계를 잘 지키면서 졸업을 했다. 지금도 교수님들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곤 한다.

우여곡절 끝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합격의 순간, 어떤 기분이었나?

불행하게도 로스쿨을 졸업하던 해에 바로 변호사시험에 합격을 하지 못했고, 그 이듬해에도 통과하지 못했다. 졸업 후 3년째 되던 해에 합격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경비원 생활을 하고 있었다. 변호사인 후배가 처음 합격 소식을 전해왔을 때, ‘이제야 긴 터널을 통과했구나, 남들은 인생 2막을 시작할 나이에 나는 이제야 내 인생의 1막이 끝났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깨에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한 기분이랄까. 가장 먼저 떠오른 어머니 얼굴, 그동안 마음 고생한 가족들에 대한 고맙고도 미안한 마음 등 만감이 교차했다.

변호사시험 합격 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지난 1년은 어떻게 보냈나?

합격 소식을 어머니께 전하고 1개월 동안 경비 휴무일에 어머니와 함께 하면서 꿈같은 시간을 보냈다. 늙은 어머니님과 지난 시간을 회고하고 어머니의 삶을 기록하면서 진정한 행복이란 것을 처음 느꼈다. 그런 시간을 보내던 중 어머니님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고, 입원 후 병간호를 했지만 한 달 만에 돌아가셨다.

그렇게 두 달이 흘렀고, 유퀴즈 온 더 블록이라는 프로그

램에 출연한 것이 계기가 되어, 방송사, 신문사, 라디오, 잡지사와 인터뷰를 했고, 원고 기고도 하면서 세상 속으로 어머니와 나를 내보냈다. 대중과 소통을 하면서 6개월간의 변호사 실무과정을 마쳤고, 개인사무소 개업 준비를 했다. 은둔 생활로 연락을 못했던 지인들과 만나기도 했으며, 그동안 나를 걱정해 주었던 분들을 찾아뵙고 고마움을 나누기도 했다. 변호사시험 합격 후의 1년이 10년을 보낸 듯 바쁘고 알차게 채워졌지만, 어머니님이 없이 보낸 시간들이라 많이 허전하다.

오랜 시간 꿈꾸던 변호사가 현실이 되었는데, 이상과 다르다고 느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변호사라는 직업의 역할상의 한계를 많이 느낀다. 변호사는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은 시간 의뢰인들을 접하는 사법 시스템의 한 축이다. 진실에 가장 근접한 사법의 한 축이라고 하면 과장일까? 고객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기에 변호사는 진실과 거리를 누구보다 생생하게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사법 제도적 한계와 시스템을 운영하는 구성원의 사실적 한계로 인해 진실이 침묵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변호사로서의 직업적 한계를 느끼게 되고 ‘이것이 변호사의 직업적 숙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웃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편을 들어줄 변호사가 필요한 분들과 나의 지식·경험을 공유하면서 위안을 얻게 되는 분들을 보게 되면 기쁘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힘도 많이 들고 경제적으로 풍족한 직업도 아니지만, 이런 즐거움이 있기에 좋은 직업이다.

고시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좌절의 순간을 극복하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 같다(웃음). 노하우를 공유해 준다면?

살면서 가장 힘든 시기라면 최선을 다했지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일 것이다. 좋지 않은 결과로 인한 후폭풍을 감당해 낼 수 없다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파멸을 초래할 수도 있다. 나 역시 그런 경험이 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은 자신을 걱정해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게 되고, 그 상처는 자신에게 더 큰 상처로 돌아온다. 때문에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

할 수 있어야 주위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생긴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사랑은 여유에서 나오기 때문에 힘들수록 여유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자신을 믿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 조금 늦어도 괜찮다는 여유와 성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나처럼 너무 늦지는 않았으면 좋겠다(웃음).

끝으로 법조인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기 목적의식이 가장 중요한데, 이기적 목적 보다는 이타적 목적이면 좋겠다. 이기적 목적으로는 많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진실된 힘은 이타심에 있고, 자신에 대한 면밀한 분석, 그로부터 스스로를 진실되게 사랑하는 힘을 통해서만이 타자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발현된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웃음).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기 목적의식이 있다면 단 하루를 법조인으로 살아도 좋은 법조인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능력이 있는 법조인 보다는 좋은 법조인으로 만날 수 있다면 더 큰 즐거움이 아닐까?

권진성 변호사

- 1984 동아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입학
- 1992 학부 졸업, 고시준비
- 1993 - 2014 22번의 고시 도전
 - ※ 고등고시(행정고등고시, 법원행정고등고시, 사법시험) 1,2차
- 2015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 2020 변호사시험 합격
- 2020.12. 변호사사무소 개업

issue 01



(위에서 아래)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 결선 모습, 수상팀과 시상자 단체사진

**제7회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
충남대, 충북대 로스쿨팀 1위**

지난 1월 18일(월) 제7회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의 본·결선이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책에 따라 전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허부문에서는 충남대학교 로스쿨팀(고기정, 김창훈, 이정주)이, 상표부문에서는 충북대학교 로스쿨팀(박석현, 박지원, 김아미)이 우승하여 특허법원장상을 수상했다. 1월 25일(월) 진행된 시상식에는 이승영 특허법원장을 비롯하여 김용래 특허청장, 김성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규홍 한국특허법학회장이 참석하여 직접 시상하였다.

**제7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서울대팀 우승**

1월 29일(금) 예비법조인들의 헌법재판실무 능력을 겨루는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개최되었다. 본선에는 참가 신청을 한 52개팀 중 8팀만이 진출하였으며, 대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원격영상재판 방식으로 진행됐다. 헌법재판소장상은 서울대 로스쿨 유스티티아팀이, 금상은 한양대 로스쿨 민주적 정당성팀이 수상했다. 은상은 고려대·아주대 무색무취팀과 연세대 로스쿨 최고존엄팀이 차지하였으며, 우수변론상은 무색무취팀 심현희 학생이 수상했다.



수상 결과를 발표하는 박종보 헌법재판연구원장

issue 03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의 모습

**제11회 모의 국제상사중재 경연대회
서울대 SNU팀 우승**

지난 3월 20일(토)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11회 모의 국제상사중재 경연대회에서 서울대 로스쿨의 SNU팀이 우승을, 연세대 로스쿨과 연세대 언더우드 국제대학 연합 YSL팀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Best Orator(최우수 변론상)는 서울대 로스쿨 SNU팀의 양선재, 이종훈씨가 받았다. 서울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사)대한상사중재원, (T)국제중재실무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펜데믹에 모든 라운드를 Virtual Hearings로 진행하였으며, 국내외 8개 팀이 구두변론에 참가해 한양대 로스쿨, 인도 델리대 팀까지 4강에 진출했다. 국내외 유수의 로펌 변호사와 로스쿨 교수들이 중재인으로 판정에 참여하였으며, 이번 모의재판대회에 참가한 팀 중 다수가 홍콩과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기사출처: 리걸타임스(2021.03.14)

issue 04

2021년 로스쿨 학위수여식 개최

지난 2월 전국 로스쿨에서 2021학년도 학위수여식이 개최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 비대면 학위수여식을 개최하였으며, 대면 학위수여식의 경우에도 규모를 축소하고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도록 하였다. 비대면 학위수여식이지만 로스쿨 원장, 대학교 총장, 교수 등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는 등 대면 학위수여식과 다름없이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학생들의 지난 3년간의 노력을 격려하고 법조인으로서의 첫발을 딛게 된 것을 축하하였다.



동아대학교 로스쿨 학위수여식 포토존

issue 05



원우협의회가 대한변협에 전달한 인권수호, 정의실현 근조화환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규탄 시위 열어**

로스쿨 출신 변호사와 재학생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가 3월 15일(월)부터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2월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원우협의회는 “후배들의 목숨 줄을 쥐고 흔들면서 직역수호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라고 비판하며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2021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일정

1. 응시 대상

3학년생 전원(연구등록생 포함) 및 별도 신청자(졸업생 및 수료생, 2학년생 등)
(선택과목 포함-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중 택1)

2. 시험 일자

구분	시행일
제1차	06.21.(월)~06.25.(금) (6/23(수) 휴식일)
제2차	08.02.(월)~08.06.(금) (8/4(수) 휴식일)
제3차	10.15.(금)~10.19.(화) (10/17(일) 휴식일)

이런 일도 변호사가 하나요?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

얼마 전 퇴근을 준비하던 중 급하게 상담을 원한다는 분으로부터 연락이 와, 늦은 시간 전화로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늦은 밤이나 아침 일찍 변호사를 찾는 분들은 가족이나 지인이 갑자기 신변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아, 급한 일이구나 싶어 이야기를 들어 보았는데 제 생각과 달리 내담자께서는 몹시 덤덤하게 이야기를 풀어놓으셨습니다.

아들의 군 입대와 관련해 작은 문제가 생겨 이야기를 나누고 싶는데 대도시에 나가기가 너무 어려워 전화 상담을 신청하신 아버님께서 “별 일 아닐 것 같고 이미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 잘 해결될 것 같다”고 하시면서도, 혹시나 해서 마지막으로 변호사와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전화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일을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는 것과 달리 아드님께서 연루되신 일은 병무청에서 직접 수사대상인 문제였고, 아드님께서도 대응을 너무나 잘못하고 계셔서 차칫 잘못하면 더 심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서는 상황에 대한 법적인 설명을 자세히 들으시고 바로 저의 도움을 청하며 선임을 하셨고, 저는 같은 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님들과 함께 작업하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급한 일이 마무리 되고 저를 직접 마주

한 아버님께서서는 멋쩍게 감사 인사를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아닌데 이런 일도 변호사가 하나요?”

제게 찾아오셨던 분 외에도,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자신의 문제를 변호사가 아닌 유사직역 보유자와 상의하거나, 법률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 지인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 일을 처리하다 문제를 키우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황망한 사태에서야 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찾기 어렵기도 하고, 변호사들이 이런 것도 도와주시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같은 말씀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질문들의 배경 속에는 변호사의 업무 영역의 문제, 그리고 변호사와의 물리적 거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조운리를 수강하시고 시험공부를 하신 분들이나 법조 선배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변호사법 제3조)』 하고 있어 변호사는 사인 사이는 물론, 사인과 국가, 기관과 기관 등 사실상 모든 영역의 법과 관련된



사무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이나 규정과 관련되지 않은 사회 현상이 없다는 점을 생각하여 보면 사실상 세상의 모든 영역이 변호사의 업무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국민들은 변호사의 업무 가운데 극히 일부인 송무만 변호사가 할 수 있다는 선입견으로 인해, 유사직역이나 비전문가를 찾거나 심지어는 본인의 주관에 따라다 고초를 겪기까지 합니다. 이는 국민의 입장에서나 저희 변호사들의 입장에서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률 사무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고, 행정청에는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 같은 기존의 인식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변호사들이 생각하지 않던 영역들을 적극적으로 변호사의 업무 영역으로 흡수하여 넓은 범위에서 조력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더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력해야 합니다.

영역과 직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변호사가 전문 영역을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제도를 강화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조력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은 물론,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폭넓은 실무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현업에 있는 변호사들도 후배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물리적인 거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들이 조금 더 국민을 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에 변호사를 찾기 어려운 무변촌 등을 직접 찾는 것이 어렵다면 비대면 방식을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운항 중인 선박의 선원이 회사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거나, 무변촌의 농·어민이 급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되거나, 오지에 근무하는 군인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입는 경우 등의 입장에 있는 각 개인은 당장 변호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처지에 놓인 분들을 위해서는 변호사가 비대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내담자와 소통하고 의뢰인과 이야기하고 전문가로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의 업무 영역이나 활동 범위는 제도적 보완과 기술 발전은 물론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정책의 변화에 따라 서로 더욱 광범위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여러분께서 다양한 직군과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의 세계관을 넓힘으로써 변호사가 되셨을 때 조금 더 많은 분야에서 조력하실 수 있도록 넓은 시야와 큰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흠수저 10년차 변호사의 고군분투기



법률사무소 선율
박상수 변호사

#1. 변호사 2년차 마이너스 1억

2014년은 나의 인생의 많은 것이 변한 해였다. 변호사 2년차, 결혼 3년차를 맞이했고, 지주회사 준법지원인으로 발령나서 근무지가 변동됐으며, 아들이 태어났다. 아직 빚밖에 없고 월세방에서 살아내고 있는 중에 아이까지 태어났으니 그 막막함은 어디에 말하기 어려웠다.

남들은 음서제니 금수저라 부르는 로스쿨을 다녔지만 부모님 노후 준비라고 해야 인천에 집 한 채 있는 서민 집안의 자녀였던 나는 로스쿨 6학기 학비 중 성적장학금을 받은 한 학기를 제외한 5학기의 학비를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학교를 다녔다. 로스쿨 재학중에도 강의 등 생계를 위한 일을 계속했지만 3년의 생활비와 책값 등을 감당하느라 로스쿨 졸업 시절 빚은 학자금 대출을 포함해 7000만원이 넘었다.

2013년에 대기업 사내변호사로 취업을 하고 조금은 나아질 것을 기대했지만 연봉 6000대 정도의 초봉으로 처음 사회 생활을 시작하며 양복을 구입하고, 신혼 세간을 마련하고, 작은 준중형차 한 대를 사고나니 로스쿨 졸업할 때 가지고 있었던 마이너스 7000 정도의 빚은 1년뒤 어느새 마이너스 9000 거의 1억까지 치솟아 있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것이다. 사실상 방 한칸 거실 하나인 15평짜리 작은 집에서 젖먹이 아이를 길러내기는 너무도 좁았고, 변호사가 되어서도 달라질 게 없는 삶에 절망감이 들기도 했다. 결국 변호사가 되고 나서 접었던 강의를 다시 시작하는 등 돈을 벌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설 수 밖에 없었다.

당시 일주일에 쉬는 날 하루도 없이 세 개의 일을 해내던 나는 3년 내에 빚을 모두 갚고,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작은 집 하나를 빚을 내서라도 마련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2. 변호사 4년차 드디어 부채 탕감

그 후로 2년여 정말 쉽지 않은 일을 했다. 지주사의 유일한 변호사로서 늦게까지 일을 하고 저녁에 귀가한 이후에는 강의 준비와 IT 업체 운영에 참여했다. 그리고 주말에는 모두 강의를 이어나갔다. 매일같이 일을 하니 월요병이라는 것을 겪을 틈도 없었다. 다행히 모든 일들이 잘 되어 갔다. 회사에서는 나름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으며 변호사로서 성장했고, 강의도 IT 업체도 모두 빠르게 성장하며 매출을 늘려 나갔다. 그리고 변호사 4년차에 1억에 달하는 부채가 모두 탕감되었다. 15평 월세에서 살던 집도 24평 월세를 거쳐 4년차 연말에는 보증금 대부분을 전세자금대출로 채워야 했지만 32평 전셋집으로 옮길 수 있었다.

#3. 변호사 6년차 유학 제의와 치솟는 부동산 가격

부채가 탕감된 후 성인이 되고 처음으로 제대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때쯤부터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더불어 직장에서의 역할도 커져가면서 직장에서는 다음해 미국 유학을 제의하기에 이르렀다. USC LL.M 유학은 분명 변호사로서 나의 커리어를 한번 더 상승시킬 수 있는 일이었기에 많은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 제의였음에도 때마침 직장 외에서의 수입이 직장에서의 수입을 넘어서고 있는 시점에서 그 일들을 모두 포기하고 유학을 선택하기는 것은 너무도 고민되는 일이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고 있어 유학을 다녀오면 아이가 학교에 가기 전에 내집마련을 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겠다는 위기감도 작용했다. 직장이 싫은 것이 아니었지만 모든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무엇이든 결심을 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이 느껴졌다.

#4. 퇴사, 개업 그리고 청약 당첨

2019년 나는 결국 변호사가 되던 2013년부터 다니던 기업에서 퇴사하고 로스쿨 동문인 변호사와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안정적인 수입과 직장에서의 커리어 등을 포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중견을 바라보는 경력을 가진 변호사로서 한번쯤 승부를 걸어볼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 개업 이후 주어진 시간은 잠시도 헛되이 쓰지 않았다. 새로운 사업 구상 및 추진을 위한 작업에 바로 돌입하였고,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내집마련을 한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46점의 낮은 청약 점수로도 청약을 넣고 떨어지기를 반복하였다. 그리고 결국 그해 가을 송파구 끝자락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에 당첨되었다. 비인기 구조에 틈새 지원을 했는데 그것이 운 좋게 적중한 것이다. 이제 중도금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일하는 것만 남았다. 입주 시점이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될 때이기에, 아이가 태어날 때 세웠던 목표를 거의 달성할 수 있었다.

#5. 흠수저 변호사의 좌충우돌 9년을 돌아보며

로스쿨에 진학을 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해보지도 않고 나이가 많아서, 학점이 낮아서, 돈이 없어서 등의 이유를 드는 경우를 많이 본다. 나는 도움이 될만한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기에 대학 이후 학비와 생활비는 모두 내가 벌어서 내며 살아왔다. 그 과정에서 정말 어려운 일들도 많았고 억울한 일도 많았다. 무엇보다 이 사회가 스스로 돈을 벌며 꿈을 이루려는 사람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가장 억울했다. 로스쿨을 다니는 동안 낮에는 수업을 듣고 밤에는 강의를 하러 가다보니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준비한 사람치고는 학점이 좋지 않았다. 그래도 아주 나쁘지는 않아 대

형로펌들이 제법 인턴을 불러주기도 했지만 항상 컨펌되는 것은 나보다 좋은 스펙과 좋은 학점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남들은 가볍게 러닝화를 신고 달리는 길을 나는 발목과 무릎에 샌드백을 차고 달리는 기분이 들 때가 많았다.

그러나 흠수저이기에,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 수 없었기에, 계속해서 도전할 수 밖에 없었다. 흠수저의 입장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와 비교해보면 그래도 터널의 끝이 보이는 로스쿨 제도가 법조인의 꿈을 이루기에는 더 나은 제도였다. 나는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계셔 가사 장학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가사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면 아마 로스쿨에서 꿈을 이루고 변호사로서 자립하기 보다 용이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비록 그렇다 해도 여전히 우리 흠수저들에게 불공정한 세상이 완전히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절박함이라는 무기가 있고 또 그 절박함이 가지는 힘은 정말 강력하다.

며칠 전 흠수저 출신으로 변호사 업계에서 입지전적으로 성공하시고 현재 국내 대형로펌의 대표를 하고 계시는 변호사님과 술자리를 할 기회가 있었다. 대표님의 가난한 어린 시절 및 대학 시절과 그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버텨낸 이야기를 들으며 내 이야기를 듣는 듯 하여 다 큰 어른 둘이 살짝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지금 이 글을 읽으며 로스쿨 진학을 망설이는 흠수저 후배들에게 로스쿨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금수저 친화적이지 않고, 변호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금수저만 성공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 해주고 싶다. 로스쿨의 장학제도는 국내 어떤 고등교육기관보다 훌륭하고 내가 다닐 때 보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재학생의 비율은 더욱 높아졌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흠수저로 살아온 경험은 고객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지금 많이 힘들겠지만 계속 힘들게 살 수는 없기에 우리같은 사람들은 끝없이 도전해야 한다.

후배들에게 힘들 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웠던 격언을 전하며, 후배들의 자존감을 꺾으려는 사람들 앞에서 늘 기죽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말길 부탁드립니다.

나를 죽이지 않는 고통은 나를 강하게 할 뿐이다 - 프리드리히 니체

언론중재위원회 실무수습 후기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기

김도희

1. 참가하게 된 계기

다양한 기관에서 실무수습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로스쿨 제도가 가진 장점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학업에 대한 부담으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이수 시간을 채우는 것조차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저는 2학년 여름방학, 대전지방법원에서 실무수습을 했고 이때 실무수습 시간은 모두 채웠지만, 이후에도 기회가 된다면 실무수습을 더 나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계획했던 법원의 심화과정이 코로나로 인해 무산되었고, 아쉬운 마음에 10회 변호사시험이 끝난 뒤라도 실무수습을 나갈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가능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언론중재위원회 실무수습 공고가 나왔고 Zoom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되어 서울에 거주할 곳을 따로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기자와 아나운서 등 언론 분야에서 10년간 일하다 로스쿨에 들어온 저는 언론분쟁과 언론중재에 대해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실무수습 지원서는 '경력 및 활동사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자기소개서는 '지원동기',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본인의 의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별, 학년별 인원이 이미 정해져 소수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다른 기관과 달리, 언론중재위원회는 학교와 학년 상관없이 90명을 뽑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경쟁률이 2대 1이 넘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2. 프로그램 일정

2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12시,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의들이 미리 정해져 있었고, 오후 5시 이후에는 과제 수행 준비를 위한 시간을 주셔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는 만큼 복장 지침이 따로 없다고 안내해주셨기에 편안한 옷차림으로 자택에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언론조정 중재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강의들이 대부분이었지만 현직 언론인이나 언론사 사내 변호사, 선배 법조인으로부터 실

무적인 정보를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수료 조건은 70% 이상 출석과 과제작성이었고 기본권 관련 수업을 미리 들어두신다면 강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한결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3. 인상 깊게 들은 강의들

변호사시험을 치르고 1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진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CBS 기자 출신으로 로스쿨을 졸업한 장윤미 변호사님의 강의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후배들이 고민해봤으면 좋을 만한 이야기들, 힘든 수험생활을 버텨왔던 경험들,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진솔하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서 고민한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12년차 법조기자로 활동중인 좌영길 헤럴드경제 사회부 기자님의 '법조 보도와 변호사업무'라는 강의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유독 법조 기사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언론에 대한 분석, 법조 기자단 해체 이슈와 관련해 생각해 볼 점, 공판 위주 보도가 어려운 이유 등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정치인이나 연예인을 대리할 때, 때로는 무리한 '전부 무죄' 주장보다 '일부 유죄'를 받더

수습생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강의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느껴졌고, 그 덕분에 실무수습 과정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프로그램들로 채워질 것 같습니다. 함께 수업을 들었던 다른 수습생의 질문에서도 배우는 게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언론법과 언론중재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꼭 한번 참여해 보셨으면 합니다.



zoom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된
실무수습



라도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정치적 생명이나 이미지를 지켜주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법적 판단 못지않게 언론을 상대로 한 대응에 신중해야 한다는 이야기 역시 새겨들을 가치가 있었습니다.

‘언론법 개론’ 강의를 맡으신 부산대 로스쿨 조소영 교수님은 표현의 자유가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재미있게 설명해주셨고, 취재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잊힐 권리 등을 실제 사례를 통해 전해주시며 생생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이었음에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을 정도로 열정적인 강의였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기획팀장이신 양재규 변호사님은 ‘사례로 보는 언론조정 중재실무’라는 주제로 언론분쟁이 발생하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 조정이 이뤄지는지 세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와 기사삭제청구권(기사열람 차단청구권) 등 최근 개정이나 제정 논의가 있는 이슈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유익했습니다.

4. 아쉬웠던 점과 제안

비대면 강의였기에 실제 조정 절차를 참관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실무수습 기간, 언론조정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제를 제출하도록 하셨는데,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에 관하여 이론적인 설명은 들었지만, 실제 조정신청서를 본 적은 없었기에 과제를 수행하면서 상당히 막막했습니다. 별도의 강의를 따로 마련하여 다양한 양식의 언론조정신청서를 함께 살펴보는 식으로 진행되었다면 현실적으로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밖에 언론은 아니지만 언론 못지않은 파급력이 있는 포털 또는 유튜브 관련 주제의

강의가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SBS 사내 변호사와 SBS 출신 교수님의 강의가 있었는데, 민영방송이 아닌 MBC나 KBS 등 공영방송 측 인사를 섭외한다면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저널리즘을 비판하는 프로그램이나 매체의 시선에서 바라본 이야기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또한 언론사 입장이 아닌 피해자(언론조정 신청인)를 대리했던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강좌를 마련한다면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잡힌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마무리

개인적으로 저는 6년 넘게 근무했던 TJB(대전방송)를 상대로 퇴직금 소송을 하고 있고 언론의 공공성 강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충남대에는 언론법 관련 과목이 없어, 주로 노동법 과목을 집중적으로 들어왔는데, 이번 실무수습은 언론법에 대해서도 더 잘 알아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대면 강의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신 변호사

님, 교수님,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언론중재위원회 교육 담당 과장님께서 매우 꼼꼼하게 일정을 챙기고 수습생을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난해 수습생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올해 처음으로 현직 언론인을 섭외하겠다고 하셨는데, 수습생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강의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느껴졌고, 그 덕분에 실무수습 과정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프로그램들로 채워질 것 같습니다. 함께 수업을 들었던 다른 수습생의 질문에서도 배우는 게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언론법과 언론중재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꼭 한번 참여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의 로스쿨 적응기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2기

노예진

“아니, 로스쿨에 갈 건지는 일단 로스쿨에 합격하고 생각하는 거라니까?”
대학 동기의 이상한 주장에, 나는 그렇게 로스쿨생이 되었다.

나는 법학과 폐지와 로스쿨 출범이 맞물리던 시기, 지금은 폐지된 법대의 마지막 학번으로 입학했다. 다른 동기들이나 선배들을 따라 사법시험을 하겠다고 흥내를 낸 것은 잠시일 뿐, 동기들이 로스쿨로 진로를 빠르게 결정하고 진학하는 와중에도 별다른 의욕 없이 어영부영 학교를 다니다 졸업했다. 이미 로스쿨로 진학한 대학 동기들과 선배들의 계속되는 권유로 로스쿨에 지원했고, 운이 좋게도 합격하게 되었다.

1. 선행학습의 시작: 사례형의 충격

다시 시작한 민법공부의 첫 날, 변호사시험의 민법공부를 개관하며 ‘청구-항변-재항변’ 구조를 알게 되었다. 충격이었다. 어렵פות이 배웠던 민법과는 전혀 달랐다. 사법시험 1차를 대비하던 민법 공부는 판덱텐 체계에 맞춰 구성되었다. 조문 순서에 맞게 신의칙을 배우고, 미성년자를 배우고, 법인을 배우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객관식에 나올 지엽적인 판례를 공부해야 했고 실제로 법리가 어떻게 쓰이는지는 상상하지 못한 채 판례의 결론을 외우고 이른바 ‘눈에 바르는’ 공부를 위주로 했다. 돌이켜보면 그런 방식의 법공부에 흥미를 붙이지 못했던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반면 사례형의 공부는 ‘청구-항변-재항변’ 등의 구조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다. 채권각론의 매매계약이 맨 앞의 ‘청구’부분에 쓰이고, 채권총론의 상계가 ‘항변’부분에 쓰이고, 민법총칙의 소멸시효가 ‘재항변’으로 쓰이는 등 민법의 편제 순서와는 전혀 무관하게 법리가 활용되는 것을 알았다. 민법의 법리들이 실제 소송과정에서 쓰이는 양상을 깨닫게 되자 법학 공부가 입체적으로 다가왔다. 부끄럽지만 학부 시절 학업에 소홀해 사례형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사법시험 2차 사례답안 작성도 경험하지 못한 나에게는 생경한 충격이었다.

재미있었다. 법학과에서는 합격만을 상상해보았지 변호사가 된 뒤의 일

은 상상해본 적이 없었다. 법학 공부를 하면서 단순히 외워야 하는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변호사가 되어 소송에서 이 법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처음으로 제대로 해 보는 사례형 공부에 어렵지만 재미를 붙이며 공부해 나갈 수 있었다.

2. 1학년 과정: 기록형의 충격

입학한 후 첫 학기, 기록형 공부를 강조하시는 채권법교수님의 수업을 들었다. 또다시 충격이었다. 1학년에게는 버거웠지만 청구취지를 알려주시고 요건사실론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청구취지를 특정하라는 과제에서 거듭 오답을 내기 일쑤였다. 사례형 답안에서는 은근슬쩍 뭉개어 쓸 수 있었던 부분마다 날벼락 같은 호통이 내리 꽂혔다. 변호사는 금액과 날짜에 예민해야 한다는 교수님의 가르침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법학이 실무에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를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같이 공부하던 동기 A의 꼬드김에 2학기에는 용기내어 기록형을 경험해보기로 했다. 기록형 문제를 활용하시는 교수님의 수업을 수강하며 그동안 배워온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간접적으로나마 배울 수 있었다. 기록형 문제를 접하면서, (실제 기록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습지만 법대생 시절 막연히 동경하던 사법연수원생이 된 기분에 설레기도 했다. 의뢰인상담일지부터 계약서, 등기부, 내용증명 등이 이어지는 기록을 보며 실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 상상해보기도 했다.

나아가 가인법정변론대회를 준비하며 소장과 답변서, 준비서면을 기재해보기도 하고, 법무법인에서 실무수습을 해보며 소송의 진행을 간접적으로나



마 체험해보기도 하였다. 실제 실무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해보고, 서면을 작성해본 것은 큰 자극이었다. 아직은 너무나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기록형을 체험해보며 실무로서의 법학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법학이 학문이면서도 실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3. 로스쿨에서의 법학

부진정법학사 시절 살짝 경험해본 법학보다, 로스쿨에서 배운 법학은 보다 생동감 있게 다가왔다. 여러 형태의 시험을 동시에 공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잘 활용하면 시너지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령 형사소송법을 처음 공부할 때, 형사기록형을 참고하며 공판조서는 무엇인지, 진술조서는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증거능력이 어떻게 문제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기록을 통해 이해하니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학부 때와는 전혀 다른 법학공부에, ‘법학사’라는 주변 기대로 부담도 있지만, 오랫동안 흐려지던 꿈에 다시 색을 입히면서 느끼는 즐거움도 그에 못지않다. 단순하게 이해해야 할 내용, 외워야 할 판례라고 생각하기보다 변호사가 되어 씨먹을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소송을 상상하며 소송과정에 대입하여 이해하는 공부를 해 보니 학부 때보다 법학 공부가 훨씬 흥미가 생겼다.

법학을 그 자체로 학문으로서 공부하는 것도 의미있지만, 한편으로 법학은 사회과학이면서 실용학문인 만큼 배운 내용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도 고민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씨실과 날실로 옷감을 짜듯, 학문으로서의 법학과 실무로서의 법학을 모두 숙지할 때 법적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평생응시금지조항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2



최창호

I. 서언

로스쿨 창 2020년 마지막 호에서는, ‘평생응시금지조항’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중 일부분을 실었고, 이하 본문에서는 그 나머지 이유를 신고자 합니다.

II. 평생응시금지조항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1. ‘평생응시금지조항’이란?

‘평생응시금지조항’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으로서,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라는 규정입니다. 위 조항에 의해 평생 동안 변호사시험(이하 ‘변시’) 응시가 금지된다는 점 자체만으로 수험생에게 중대한 기본권의 침해라 주지만, 위 조항에서의 5년이라는 기간도 실상은 3년11개월이 채 되지 않습니다. 로스쿨 3학년 학기 중 졸업시험을 합격하여 졸업요건을 갖춘 자는 거의 대부분이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이하 ‘법학전문석사’) 취득예정자의 지위에서 그 다음해 1월에 실시되는 변시에 응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험생으로서 합격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는 최종 기한은 법학전문석사 취득일(졸업일)로부터 4년째가 되는 해에 실시되는 변시 기간의 종기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졸업일은 매년 2월25일 경이고 5회째가 되는 마지막 변시 기간의 종기는 위 취득일로부터 4년째가 되는 해의 1월10일 경입니다. 즉, 수험생은 불합격한 채로 법학전문석사 취득일로부터 3년11개월이 도과하는 순간 평생 변시 응시가 금지되는 것입니다.

2. 법령 간의 체계적 균형 상실

평생응시금지조항으로 인해 ‘변호사시험법 제6조 중 특히 제2호, 제5호, 제6호’는, 별 문제가 없는 조항에서 갑자기 인간의 기본권을 절대적·극단적으로 침해하는 기이한 형태의 괴물조항으로 변형되어 시험관련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에서도 체계적 균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법(이하 ‘변시법’) 제6조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2호)과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5호) 그리고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6호)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하 변시법 제6조 제2호, 제5호, 제6호를 합하여 ‘절대침해 조항’이라 함). 위 ‘절대침해 조항’의 침해가 절대적·극단적인 이유는, 만약 법학전문석사 취득자나 취득예정자가 첫 변시를 보기 전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제2호) 파면되면(제5호) 위 선고를 받은 때로부터 집행이 끝난 후 5년까지(제2호) 또는 파면된 때로부터 5년까지(제5호) 변시를 응시할 수 없으므로 결국 단 한 차례의 시험도 응시할 수 없어 변호사가 되는 것이 근본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호사가 된 자라 하더라도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변시에 응시할 수 없게 되는데(제6호), 여기서 ‘제명의 효과’가 변호사자격의 박탈을 의미한다면 위 경우에는 절대적·극단적 침해뿐만 아니라 평등권침해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즉 위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법시험(이하 ‘사시’)을 통해 변호사가 된 사람은 로스쿨에 입학만 한다면 위 제명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 변시에 응시하여 다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반면, 변시를 통해 변호사가 된 사람은 평생응시금지조항에 의해 변시 응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위 ‘절대침해 조항과 절대침해 유사조항’이 절대적·극단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괴물조항이 된 이유는 바로 ‘평생응시금지조항’ 때문입니다. 사실 ‘절대침해 조항’ 등은 그 자체만으로는 별 문제가 없었던 조항이고, 시험과 관련된 대부분의 법령 즉 법무사를 포함하여 변리사, 공인노무사는 물론 공무원임용 등 거의 모든 자격 또는 임용시험과 관련된 법령에서는 위 ‘절대침해 조항’ 등과 같이 시험응시자격의 결과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들은 아무 문제없이 오랫동안 존속하여 왔습니다(법무사규칙 제5조 제1항, 변리사법 제4조의2 제3항,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2 제2항,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 참조). 그런데 유독 변시법의 ‘절대침해 조항’ 등만이 ‘평생응시금지조항’으로 인해 위와 같이 괴물조항으로 변형된 것입니다. 따라서 위 ‘절대침해 조항’ 등이 원래의 합헌적인 취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평생응시금지조항’이 하루 속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3. 외국의 경우

평생응시금지조항은 사후 구제방안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규정입니다. 특히 ‘응시횟수 제한’에 비해 비교 불가할 정도로 기본권 침해 정도가 큰 ‘응시기간 제한’까지 시행한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와 일본뿐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선 2003년에 미국의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미국의 일부 소수 주에서 시행하는 ‘응시횟수 제한’과 함께 미국 어느 주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응시기간 제한’을 합하여, 응시제한 조항을 입법화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하필이면 일본의 위 응시제한 조항을 그대로 베껴 제정안을 만든

것입니다.

심지어 일본조차도 변시 응시가 평생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예비시험이라는 우회로를 두어 재응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재입학은 모든 교육과정에서 오랜 역사를 통해 인정된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서 로스쿨 재입학을 통한 재응시 역시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에 뜬금없이 이를 입법이나 헌재결정례로 막고 있지도 않습니다.



미국의 변시는 절대평가의 자격시험으로 누구나 일정 점수를 넘으면 합격이 가능하고, 응시제한이 없는 주가 훨씬 더 많으며, 응시제한이 있는 주에서도 위 제한이 없는 주로 가서 변시 응시가 가능한데다, 응시제한이 있는 주에서도 petition(청원)을 통해 사유소명 시 응시기회를 재부여하고, 사유가 없더라도 6월~1년의 재교육을 통해 응시기회를 재부여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변시는 절대평가의 자격시험이고 탈락률은 6%임에도 영구금지가 아닌 petition(청원)을 통해 사유소명 시 응시기회를 재부여하고 있습니다. 변시 응시기회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4. 평생응시금지조항으로 인해 수험생들은 기본서보다 요약서만을 선호하게 됩니다

평생응시금지조항으로 인해 대부분의 변시 수험생은 기본서를 보지 않습니다. 응시기간의 제한이 있는 이상 사시 경험자가 아니라면 기본서 위주의 공부, 시간의 한계상 대단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얇은 요약서를 선호하다 보니 핸드북(한 면이 A4 절반 정도의 크기에 100~300면 정도인 요약서)이 필수 수험서가 되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평생응시금지조항이 바로 이러한 부작용의 핵심 요인인 것입니다.

각자 자신에게 맞는 공부방법이 있듯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암기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서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더 맞는 수험생에게조차, 평생응시금지조항은 요약서 위주의 공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수한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도 반할 것입니다.

5. 평생응시금지조항으로 인해 의도적으로 졸업을 유예하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수밖에 없는 것이, 최악의 경우 졸업을 못하고 유급되거나 수료자라면 남게 되더라도 나중에 재입학을 통해서라도 변시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일단 졸업요건을 갖추어 변시에 응시하게 되면 이후 어떤 개인사나 가정사가 생기더라도 졸업한 때로부터 3년11개월을 초과한 순간 변시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영구적으로 박탈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평생응시금지조항으로 인해, 로스쿨에 입학한 이후 6학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졸업시험에 합격하여 법학전문석사를 취득함으로써 변시 응시자격이 갖게 된 사람이,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급이나 수료자로 남게 된 사람보다 훨씬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기이하고도 모순적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6. 평생응시금지조항은 취약계층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수험생활도 삶의 일부분인데 사람이 살다보면 예기치 못하거나 예상은 했더라도 공부에 전념할 수 없는 사정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수험기

간 동안, 예기치 못한 큰 사고로 인해 수술이나 입원을 해야 할 경우, 암이나 희귀질환 등 중병이 생기는 경우,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 등을 해야 하는 경우,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소득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 등 일일이 나열하기조차 어려운 수많은 사정이 있습니다.

저소득 계층의 로스쿨생이 졸업 후 공부와 단시간 일자리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시험준비도 제대로 못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나아지지 않아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 합격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고 평생응시금지자가 될 확률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평생응시금지조항은 저소득 계층 등 취약계층에게 더더욱 불리한 제도인 것입니다.

7. 평생응시금지조항은 법학공부 경험이 없이 로스쿨에 입학한 자들에게는 특히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규정입니다

로스쿨에 입학한 사람 중엔 사시를 준비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시생(사시 2차를 2번 치른 사람, 즉 사시 1차를 1번 합격한 사람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4시생들이 드물지 않았고 6시생과 8시생뿐만 아니라 14시생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로스쿨에 와서 법학을 처음 접한 사람이나 법학을 전공했더라도 사시를 전혀 준비해보지 못한 사람들과의 실력 차이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졸업한 때로부터 3년11개월이 초과하는 순간 평생 응시를 금지하는 평생응시금지조항은 법학공부 경험이 없이 로스쿨에 입학한 자들에게는 너무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규정입니다.

8. 변시 부정의 결과로 인한 평생응시금지자의 문제

법무부는 제10회 변시 공법 기록형 제2문이 모 로스쿨의 수업자료와 동일한 것을 인정하고 해당 문제를 전원 만점 처리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부정행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 처음일 뿐, 자교 로스쿨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의도적인 문제 유출 방식의 부정행위는 그동안 수험생들 사이에서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이번에 그냥 넘어가긴 했지만 제10회 변시 공법 사례형 제2문의 경우도, 이미 2020년 9월 다른 모 로스쿨의 행정법 연습문제의 전체지문뿐만 아니라 분설된 작은 문항 2개와도 거의 일치했습니다. 즉, 제10회 변시 공법 사례형 제2문의 전체지문 중, ① 피해자가 보건소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은 사실, ② 위 접종 후 당일 저녁부터 발열증상과 함께 안면부의 마비증상이 있는 사실, ③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청구한 사실, ④ 예방접종과 증상 사이에 인과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질병관리청장은 피해보상을 거부했고 위 거부를 제1처분이라고 명명한 사실, ⑤ 피해자의 재신청에 대해서 다시 거부처분을 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이를 제2처분이라고 명명한 사실 등이 완벽히 일치합니다. 위 전체지문에서 분설된 작은 문항 중에서는, ㉠ 피해자가 취소소송을 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를 묻는 문항, ㉡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의 법적성질을 묻는 문항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렇지만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8회 변시에서는 공법 문제로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던 '영장주의에 위반'과 관련된 문제가 공법 사례형 40점으로 출제되었고, 이때 답안지에 들어가야 할 핵심 내용을 어떻게 서술해야 할지에 대해 그 요점만을 기재한 자료가 제8회 변시 며칠 전부터 모 로스쿨 내부 복도에 부착된 적도 있었습니다.

변시 부정행위는, 단지 당해 합격자 결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시에 응시할 수 없는 평생응시금지자가 되느냐의 여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러한 결과는 당사자에게는 영구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절대적·극단적 침해란 점에서 그 폐해가 매우 극심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평생응시금지자는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입니다.

III. 결어

위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평생응시금지조항을 폐지하는 것뿐입니다.

원격영상재판 방식으로 진행된 제12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로스쿨 학생들이 모교와 자신의 명예를 걸고 도전하는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가 올해로 12회를 맞았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본선과 결선을 통합한 원격영상재판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시상식도 생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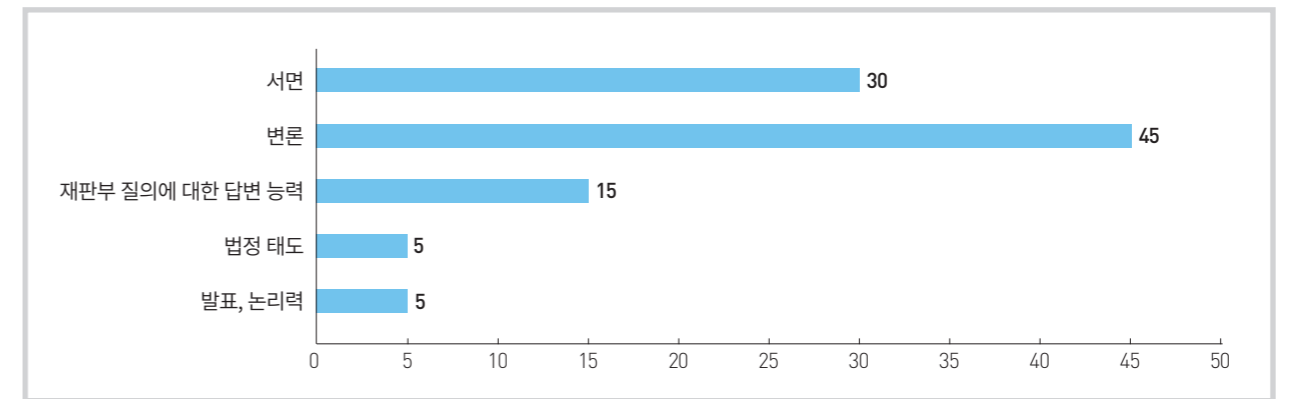
제12회 가인법정변론 경연대회 예선에는 125개팀(민사 79개팀, 형사 46개팀), 총 375명의 학생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본·결선에는 민사와 형사 각 16개팀이 진출했으며, 각 부문 1위~8위에게는 상장, 상금, 트로피, 상품이 수여되었으며, 9위~16에게는 상장과 상품이 수여되었다.

■ 본·결선 대회 흐름도

재판부: 사건 호명, 참가자 확인, 사건 개요 등	5분
↓	
쟁점 정리 (원고 2분 / 피고 2분)	4분
↓	
주변론 (원고 8분 / 피고 8분): PPT 사용	16분
↓	
재변론 (원고 5분 / 피고 5분)	10분
↓	
재판부 질의·답변 (원고 10분 / 피고 10분)	20분
↓	
정리변론(원고 2분 / 피고 2분) 및 변론종결	5분

민사부문 본·결선 문제로는 ‘토양오염(폐기물 매립)이 30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서, 해당 토지를 전전양수한 최종 매수인(원고)이 토양오염을 야기한 최초 매도인(피고)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양오염원의 제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문제, 형사 부문에서는 ‘채권양도인이 양도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한 후 그 금전을 소비한 경우 채권양수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등이 출제되었다.

■ 평가요소 배점 비율



※ 서면[쟁점 파악(10%), 논리 구성(20%)], 변론[쟁점 정리(10%), 쟁점의 구체화(입증)(25%), 상대방 변론에 대한 반박(10%)]

심사위원은 사법연수원 교수들로 구성되었으며, 각각 재판장과 배석판사 역할을 맡아 참가팀의 순위를 결정했다. 김문석 사법연수원장은 “이번 대회가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치러지게 됐지만, 원격영상재판이 보다 빈번하게 이용될 가까운 미래의 재판 모습을 미리 구현해 본 것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말하며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을 격려했다.



열띤 경연 결과 민사 부문에서는 서울대 로스쿨팀(안유진, 박예원, 권용석), 형사 부문에서는 성균관대 로스쿨팀(강승우, 박상호, 정승화)이 가인상의 영예를 안았다. 충남대 로스쿨팀(이동희, 계승경, 이창원)이 민사 부문 2위인 대한변호사협회장상을, 서울대 로스쿨팀(염주민, 이내경, 전혜원)이 형사 부문 2위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상을 차지했다. 이어 고려대 로스쿨팀(양석조, 이재찬, 손서운)과 서울대 로스쿨팀(김동연, 문경혁, 조원희)이 3위상을 수상하였다. 민사 부문 개인 최우수상은 전남대 로스쿨 노예진 학생이, 형사 부문 개인 최우수상은 성균관대 로스쿨 강승우 학생이 받았다.

Mini interview

제12회 가인법정변론 경연대회 우승팀

민사부문 - 서울대
형사부문 - 성균관대

수상 소감을 이야기해주세요!

민사팀: 학교에서 배우는 정형화된 사례를 넘어 현실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며 법학실력을 배울 수 있는 기회여서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회 참가를 통해 이러한 배움을 얻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법조계에서 권위 있는 대회에서 좋은 결과까지 얻을 수 있어서 매우 영광이고 기쁩니다.

형사팀: 우선, 같은 멤버로 팀을 구성해서 지난 11회 가인대회에 도전을 했습니다(민사경연부). 당시에도 치열한 예선 과정을 통과하고 본선에 진출했었고, 예선 및 본선 대회 준비에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아쉽게도 결선에 진출하지 못하였고, 팀원들과 함께 다른 팀들의 수상을 지켜보면서 절치부심하여 다시 한 번 도전해야겠다는 결의를 다졌었습니다. 대상을 수상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의 마음은 아마 로스쿨 합격을 한 당시의 기쁨과 견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경연에서 함께해주신 연세대학교 로스쿨 팀에서도 정말 치밀한 논리와 성실한 준비로 경연에 임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팀이 준비한 것들을 경연장에서 모두 펼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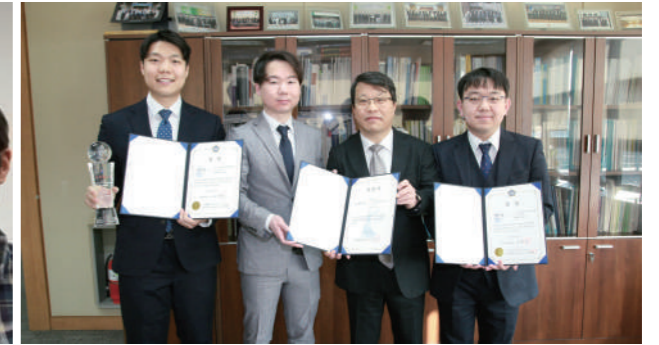
예선 준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요?

민사팀: 예선의 경우 학기 중 약 일주일 정도의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서면을 작성해야 하므로 시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 양측의 입장에서 서면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정답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한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 한 쪽에게 유리한 법리만이 정답처럼 보인다면, 혹시 놓치고 있는 점은 없는지 문제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예선 서면작성은 학기 중 학업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하루 일정을 잘 잡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는 강의 시간에는 최대한 강의에 집중하고, 오후 6시 이후로 밤 늦게까지 서면작업에 매진하곤 했습니다.

형사팀: 서면심사 준비과정은 본,결선과 다르게 ‘변론 발표’절차 없이 말 그대로 서면만으로 심사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본,결선에서의 서면보다 더욱 꼼꼼하고 완성도 높은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 형사재판의 경우 변호인측 변론요지서와 검사측 의견서를 각각 10페이지 이내에서 작성해야 하는데, 저희 팀은 우선 서면의 분량을 맞추는 것은 항상 최후의 단계에서 진행했습니다. 예선단계에서도 통상 3개 정도의 쟁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팀원 3명에서 각각 하나의 쟁점을 담당하여 우선 변호인측 또는 검사측에서 법리 검토 및 적용 논리를 검토하여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리



민사부문 우승팀



형사부문 우승팀과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김일환 원장

고 끊임없는 팀원들간의 토의를 통해 만약 한 사람이 A라는 쟁점에 대하여 변호인 측에서 초안을 작성하면 나머지 2명의 팀원이 해당 부분의 논리에 대하여 피드백을 하고 반박을 하면 그 내용 중에서 적합한 내용들은 검사측 초안 작성에 단초로 삼았습니다.

올해는 본선과 결선 통합 방식으로 진행되어서 더욱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했나요?

민사팀: 본·결선은 예선보다 더 긴 분량의 서면을 작성해야 하므로 최대한 꼼꼼하게 쟁점을 찾아내고, 중요한 쟁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논리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상대측 서면에 대하여 반론을 하거나 재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의 수를 모두 검토하면서 반론을 예측하고, 재판론까지 이어지는 논리를 잘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사팀: 본, 결선은 예선단계에서 출제된 문제와 전혀 다른 새로운 문제가 출제되며, 역시 3가지 정도의 쟁점이 출제됩니다. 본 결선 단계에서도 역시 변론 발표와 더불어

서면을 작성해야 하고, 나아가 변론 발표시 활용할 PPT 자료 역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본선의 준비기간은 예선보다는 넉넉한 편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여유롭게 생각하다가 서면 제출 및 PPT 제출 시기에 임박하여 급하게 작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처 잡아내지 못한 실수들을 줄이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시기보다 앞당겨서 기한을 정하고 부지런히 대회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PPT 자료까지 제출한 이후에는 실제 변론에서 PPT 애니메이션 효과 및 슬라이드 이동을 위해 엔터를 쳐야 하는 부분을 대본에 표시하여 규정된 발표 시간 안에 변론을 종료할 수 있도록 무수한 발표연습을 하였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면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민사팀: 대회에서 주어지는 문제들이 학교에서 접하는 정형화된 사례가 아니라 대법원에서 계류되고 있거나 아직 판례나 법리가 명확히 정해진 것들이 아닌 복잡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저희는 로스쿨 1학년의 막 마친 시점에서 민사법 법리들을 아직 다 배우지 않은 상황이었었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법리를 바탕으로 변론대회에서 판사님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논리를 전개하여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논문이나 연구서, 주석서 등을 참고하며 팀원들과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했던 시간은 힘들었지만 돌아켜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들로 남아있습니다.

형사팀: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의 문제는 두 갈래길에서 명시적으로 하나의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 아닌, 양 방향 모두에서 답을 도출하여 그 결론에 대한 근거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충실히 제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특성을 지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선 단계에서부터 3개의 쟁점에 대하여 변호인측과 검사측 각각의 지위에서 정 반대되는 결론을 도출하도록 논리를 펼치는 서면을 작성해야했고, 이는 본/결선에서 최종 지위(변호인 측 또

는 검사 측)가 부여되기 전까지 모든 대회 준비과정에서 이어졌습니다. 그렇기에 먼저 각 쟁점에 대하여 변호인측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고심하여 법리 구성과 사안 포섭을 마치면, 다시 검사측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기 위해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지위에서 스스로의 논리에 모순되는 주장을 배제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판례의 태도와 논문등을 검색하고 그것들을 재료로 삼아 엮어내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다른 팀과 차별화되는 우리 팀만의 우승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민사팀: 무엇보다도 팀원 간 협력이 잘 되었다는 점이 우승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팀원들이 모두 납득할 때까지 끊임없이 토론하면서 설득하는 과정에서 보다 꼼꼼하게 쟁점을 찾아내고, 보다 정치한 논리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대회에서 변론을 할 때에도, 재판장님께서 주신 새로운 쟁점에 대해서도 변론하고 있는 팀원 외의 다른 팀원들도 합동하여 자료를 찾아 변론하는 팀원에게 전달해주거나 서로 변론방향을 물밀에서 치열하게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혼자 고민해서 답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답변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형사팀: 끊임없는 토론과 아이디어 개발입니다. 또한 광범위한 리서치를 통해 최대한 많은 논문과 학설을 모았으며, 도서관에서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서적들을 모두 빌려 약 60권의 서적을 참고하였습니다. 이렇게 최대한 많은 글감을 모으려고 하였으며, 무엇보다 팀원 각각의 장점에 따라 역할 분담 및 팀워크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상금은 어떻게 활용할 예정인가요?

▶민사팀: 저희 팀원들 각자 사용하던 전자기기들이 오래되어서, 필요한 전자제품을 구입하는 데에 상금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비대면 환경에서 진행되었는데, 대회 전날 리허설 도중에 팀원들의 노트북이 말뚝을 일으켜 등골이 서늘한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받은 상금으로 무얼 해야 할지 더욱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형사팀: 로스쿨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가족들과 맛있는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로스쿨에 입학한 이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고 조금씩 마이너스 금액이 증가하고 있었는데, 이를 탕감하는데 활용할 생각입니다(웃음).

제13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를 준비하는 로스쿨 학우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 주세요!

▶민사팀: 서면을 좀 더 고민하면서 잘 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서면에서 좋은 변론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사안이 주어지기 때문에 많은 쟁점을 제대로 포섭하고 있는지, 제3자의 눈에서 봤을 때 논리의 허점은 없는지 등을 계속해서 점검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를 준비하는 로스쿨 학우들은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하시면 보다 좋은 서면을 작성하시고, 나아가 좋은 변론을 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사팀: 우선 도전을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음과 뜻을 함께하는 원우들과 팀을 구성하고, 대회에 도전하는 것이 전체의 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회에 참가하게 된다면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다양한 관점에서 보다 깊이 있게 사고하는 훈련을 하면 좋겠습니다.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더 좋은 내용이 나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문제에서 출제되는 쟁점과 관련된 근거조문들이 있습니다(형사재판의 경우 공소장에 기재). 그 조문에 대한 학설과 판례 그리고 이론적인 부분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주석서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현실적 측면과 법의 이상적 부분, 그 중간에서 균형점을 찾고자 현실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장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주장할 것이라고 가상으로 상정한 다음, 그에 대해 저희가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지 여러 단계로 깊이 있게 생각했습니다. 나아가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 원격영상재판 방식 등 어떠한 상황에서 도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로스쿨 창에 소중한 원고를 보내주세요!

<로스쿨 창>은 여러분의 소중한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스쿨과 관련된 내용의 원고를 자유로운 형식으로 보내주세요.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오니, 로스쿨 재학생, 교수님, 외부 필진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로스쿨창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주제에 대한 의견도 기탄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상시접수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showe@leet.or.kr)
-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제출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허위 또는 표절임이 판명될 경우 게재 취소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박소희 대리 02)752-2037

2021년 제13회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완전 정복 가이드



법무전문관
(ICRC 국제적십자위원회
한국사무소)

이준기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어떤 대회인가요?

국제인도법은 무력충돌 시 적대행위에 가담하지 않거나 더 이상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전쟁의 수단과 방법을 제한하는 규칙으로 이루어진 국제공법의 한 분야입니다. 한국전쟁을 겪기도 했고,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에서는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교과 과정에서 국제인도법을 접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국제인권법과의 차별점에 대한 이해 역시 다소 부족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국제인도법에 대한 국내 대학생·대학원생의 인식을 제고하고, 아시아·태평양 모의재판 지역대회에 참가하여 기량을 펼칠 대한민국 대표팀을 선발하는 대회입니다.

참가 기준이 있나요?

참가 자격은 2021년 7월 1일 기준, 영어

로 논리적 주장을 펼칠 수 있는 모든 대학생·대학원생에게 주어집니다. 다만, 경연이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서 진행되는 공판을 다루는 만큼, 로스쿨 학생들의 참가가 많은 편입니다.

대회 준비 방법과 수상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모의재판 문제가 공시된 후, 변론서 제출까지 약 한 달의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변론서는 Issue(쟁점), Rule(법률), Application(적용), Counterargument(반론), Conclusion(결론)에 이르는 방식으로 작성할 것을 추천하며, 단어 수 제한이 있는 만큼 쟁점 사안 간 적절한 분량을 할애해야 합니다.

모의재판 문제는 법리적 논쟁을 위해 설계되기 때문에 검찰과 피고인 중 일방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쟁점 사안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제한된 내용의 사실관계는 상반된 내용으로 추론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며, 이러한 여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수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론서와 공판 모두 영어로 진행되나, 영어의 유창함이 아닌 영어로 얼마나 논리적 주장을 펴는지가 평가 기준입니다. 재판관들 역시, 국제형사재판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법률전문가로 구성되며, 아시아·태평양 모의재판 지역대회에서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국가의 대표팀들이 호주 또는 뉴질랜드 대표팀보다 더 나은 성적을 내는 것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뛰어난 역량을 갖춘 국내 로스쿨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여 최초로 아시아·태평양 모의재판 지역대회를 제패하는 대한민국 대표팀이 배출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제13회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 MOOT Court Competition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1. 참가자격 및 팀구성

- 참가자격 : 2021년 9월 1일 기준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휴학생 포함)
- 팀 구성 : 변론자 2명, 필요 시 코치, 리서처 각 1명 포함 가능

2. 대회일정

세부사항	추진일정
참가신청 접수 *참가신청서 및 재학증명서 온라인 등록	홈페이지 공고일 ~ 6.27 (일)
모의재판 문제 공고	6.29 (화)
모의재판 문제에 대한 질문 접수 마감	7.9 (금)
모의재판 문제에 대한 질문 답변	7.19 (일)
변론서 접수	8.22 (일)
본선 진출팀 및 대진표 공지	8.27 (금)
예선 대진표 결정	9.1 (수) 이전
모의재판 구두 변론대회	9.25 (토)

행사관련 사항은 국제적십자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https://kr.icrc.org/>)

3. 시상

- 최우수상 : 표창 및 부상
IHL MOOT 아태지역대회 한국대표 참가자격 부여
(참가비 지원: 항공권, 숙박, 식사)
※ 이매일 제목에 참가자 이름 명시할 것
- 우수상 : 표창 및 부상
- 최우수 변론자 : 표창 및 부상
※ 수상팀 수와 시상내역 등은 주최 측의 사정 상 변동될 수 있음

4. 참가신청 및 기타사항

- 참가신청 : 참가신청서 및 재학증명서, 관련 질문, 변론서 제출은 모두 seo_seoul@icrc.org (ICRC 한국사무소 이메일 계정)으로 접수
※ 이메일 제목에 참가자 이름 명시할 것
- 향후 대회 관련 공지사항 : ICRC 한국사무소 홈페이지 <https://kr.icrc.org/> 에서 확인
- 문의처 : ICRC 한국사무소 이준기 법무전문관
T. 02-779-5377 / Email. jilee@icrc.org



제12회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의 수상팀과 재판관의 모습



재판관에게 준비한 법리를 설명하고 있는 참가자의 모습



상대팀의 발표를 경청하고 반론을 준비하고 있는 참가자의 모습

지난 2월 김원오 학생은 로스쿨 입시에서의 정보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실질적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공익활동단체 히어로즈(NPO Herelaws)’를 설립했다. 이제 막 발돋움 시작한 히어로즈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누고 있는 김원오 학생을 만났다.

“예비법조인으로서 작게나마 공익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한 만큼, 법조인이 된 후에는 더 큰 공익에 기여하고 싶어요!”

학부에서 정치외교학을 공부했다고 들었다. 정치에 뜻이 있었던 것인가?

원래는 정치가 하고 싶어서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했던 흔한 학생이었다.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소통하는 것을 좋아했고, 다방면에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으레 많은 정외과 학생이 그렇듯이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1학년 1학기 때 정치에 대한 꿈은 접게 되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한결같이 품던 꿈을 포기한 충격이 컸는지 강의실에만 머물러 있질 못했고, 학생회, 동아리, 대외활동, 교환학생 등 대학생이 경험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경험은 해보았다.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전공 공부를 병행하니 공부에도 흥미가 생겨 국제기구, 국제법 관련 수업을 집중적으로 수강했다. 한번 시작한 이상 끝을 봐야겠다는 욕심까지 생겼고, 결국엔 학과 수석으로 조기 졸업할 수 있었다(웃음).

로스쿨 진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무엇인가?

한번 정치학 공부를 시작한 이상 끝을 봐야겠다는 욕심이 있어서, 원래는 정치학 분야로 미국 동부지역 유학을 생각했다. 그런데 과연 여러 분야에 관심이 많은 내가, 한 분야에만 몰두할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 고민을

많이 했고, 그 고민의 결과가 로스쿨 진학이었다. 변호사는 스페셜리스트(specialist)이자 제너럴리스트(generalist)라고 하는데, 변호사의 이러한 특성이 나의 성격과 궁합이 좋다고 생각했다.

로스쿨에서의 지난 1년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작두? 곱판에 처음으로 데뷔하는 무당이 이런 느낌이었을까?(웃음) 로스쿨은 3년 동안의 열정을 바쳐 앞으로의 길흉화복을 비는 의식인 것 같다. 변호사시험에 대한 압박, 심적 여유의 상실은 모든 수험생이 겪는 어려움일 것이다. 항상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이지만, 그래도 이런 힘들음을 공유할 수 있는 동기들이 바로 옆에 있어서 그 덕에 웃으면서 버티고 있다.

로스쿨 입학 후 법학과 친해지기 위해 시도한 방법이 있다면?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취했던 습관을 빠르게 버리고 법학의 공부 방법을 겸허히 수용했다. 또한 학부 시절부터 목차와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전체를 구조화하며 공부했던 습관은 법학 공부에도 도움이 많이 되었다. 중요한 법리는 최대한 이해하고 암기하려고 노력했다. 1학기에는 적응을 못 해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2학기에는 가장 중요한 민법도 A+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 더 잘 해내고 싶은 욕심이 있다(웃음).

지난 2월 ‘공익활동단체 히어로즈(NPO Herelaws)’를 설립하였다. 창단 목적과 구성원 등 간략한 소개를 부탁한다.

초기 창단은 김원오, 박정문, 박신영 3명으로 시작했지만, 우리의 뜻에 공감해주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서 현재 인원은 15명가량이다. 정보 불균형의 간극을 메꾸며 법조인의 꿈을 같이 키워나가고, 함께 실현하고자 하는 뜻이 모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계획 중인가?

전북지역 ‘법학 및 로스쿨 입시 준비 동아리’를 인큐베이팅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전북 외 지역에 계신 취약계층을 위해 인터넷으로도 상담을 진행할 생각이다.

구체적으로는 멘토와 멘티를 최대 1:3으로 매칭하여 입시 관련 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조언을 해주고, 기본기를 다지는 리트 공부, 판례 발표, 면접 문제 토론 프로그램과 단계별 과제를 안내하여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리고 해당 스터디 보고서에 로스쿨생이 직접 참여하여 코멘트하는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로스쿨에 입학하고 싶은데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몰라 막막한 학생들에게 나침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도 불안했던 입시를 겪었던 사람들이었다. 그 시기엔 정보를 얻기도, 조언해줄 사람을 구하기 힘들었고, 그래서 더 심적으로 위축되었다. 히어로즈는 똑같은 노력을 해도 시험 유형에 맞춘 현명한 공부를 하는 사람이 더 큰 효과를 낸다는 공감에서 출발했다.

무엇보다 전북에 내려오게 된 이상, 전북대 학생이고 전북 지역의 연고를 가지게 되는 학생인데, 잠깐 거쳐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3년 동안 로스쿨 사람들끼리만 교류한 채 졸업 후에 각자의 지역으로 흩어지게만 되는 것이 너무 아쉬웠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교류할 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전북대 인재상 중 하나가 ‘봉사하는 법조인’이다. 이처럼 지역사회와 소통하면서 봉사할 기회가 있다면 더

전북대학교
로스쿨
12기

김원오
학생



할 나위 없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의미 있고 선한 목적으로 시작된 단체이지만 학업에 대한 부담이 아예 없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구성원들 모두 당장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또 다른 수험생의 입장이라 최대한 학업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주왕복선’을 활동의 모델로 삼았다. 우주왕복선은 처음 대기권을 탈출할 때 상당한 추진력이 필요하지만, 궤도에 진입한 후에는 방향을 잡을 때만 연료를 소모한다. 우리의 활동도 이와 유사하게 진행할 생각이다.

공익활동단체 히어로즈 활동을 하면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나의 경우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면서 강약조절을 못하고 모든 것을 열심히 했다. 하지만 시간 낭비를 많이 했고,



시간이 부족해 모든 사람들과 연락을 끊기까지 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으면 좀 더 요령 있게 공부했을 텐데', '힘을 줄 것과 안 줄 것을 구별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다. 입시를 준비하는 다른 분들은 이런 고통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로스쿨 입시 정보공유가 힘들어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히어로즈는 취약계층의 사회진출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불평등 해소"와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로 성장시키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우리 단체를 통해 배출되는 로스쿨생들이 다시 우리 단체에 참가함으로써 앞으로 다른 지역으로도 확장하고, 입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진출하는 선순환구조가 그려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다.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과 그 이유는?

'미래의 나'라고 답하고 싶다. 현재 법조인들 중에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미래의 나를 존경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나에게 목표를 설정한다는 의미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미래의 나를 만드는 것은 결국 현재의 나인데, 미래의 나를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설정해 놓으면 현재의 내가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지 않을까?(웃음)

여유가 생기면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나?

주로 인스타 감성 카페를 찾아 간다. 오래 앉아서 공부만

하다 보니 여가엔 항상 색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웃음). 머무르는 장소도 바꾸면서 분위기 전환도 하고, 메말라진 감성을 충전하곤 한다.

원하는 법조인 상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변호사라는 직업에 도전하고 있는 만큼,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를 가진 법조인이 되려고 한다. 세상이 넓은 만큼 그 세상을 느껴보고 싶다. 넓은 세상의 벽에 부딪히며 으스스하지 않기 위해선 끊임없이 도전하고, 발전하고,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예비법조인으로서 작게나마 공익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한 만큼, 법조인이 되고 나서도 더 큰 공익기여를 하고 싶다.

Lawschool TIP

김원오 학생이 알려주는 로스쿨 입학 꿀팁

Q. LEET,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A. LEET의 시작은 기본기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다들 '공부에는 꽤 자신있다'는 분들이 도전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기본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저마다 리트 점수가 다르겠지만, 평균적인 로스쿨 준비생을 기준으로 언어이해의 경우 '단어'부터, 추리논증의 경우 '기초논리학'부터 시작하는 것을 권장하고 싶다.

Q.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에서의 노하우가 있다면?
A. 자기소개서 꿀팁이 있다면, 논리적인 흐름과 스토리를 동시에 잡아야 깔끔한 자기소개서가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면접은 자신감이다. 제한된 시간 동안에 말을 못 하면 아까우니까 되든지 안 되든지 '일단 지르고 오자!' 라는 마인드컨트롤을 계속했다.

Q. 로스쿨 입학을 준비할 때 가장 필요한 마음가짐은?
A. 나 또한 로스쿨 입시 과정을 거쳤고, 지금은 변호사시험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다. 연애, 여행, 무대 경험, 운동 등 나의 인생에서 값지고 귀중한 순간들을 회상하며 현재의 로스쿨 생활을 지탱하고 있다. 로스쿨 입시를 준비할 때에도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이 또한 먼 훗날 귀중한 순간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LAW SCHOOLS

2022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공고

법학적성시험(LEET)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이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다양한 학부·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수학적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과 적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 법학적성시험 성적은 당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 필수요소의 하나로 활용됩니다.

▶ 높은 장학금 혜택

- 장학금 수혜 인원: 전체 재학생의 51.83% (2020학년도 1학기 기준)
- 소득구간에 따라 등록금의 100%~10%의 장학금 지급
- 경제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소득분위 3구간)에게 등록금 100% 이상의 장학금 지급
- ※ 총 2,305명(재학생의 19.21%) 전액장학금 수혜 (2020학년도 1, 2학기 기준)

▶ 특별전형/지역균형인재 선발

《특별전형제도》

- 각고 입학자의 7% 이상 선발
-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 총 1,796명 (2009~2021년)
-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에게 3년간 장학금 지급(학교별 상이)

《지역균형인재 선발제도》

- 지방소재 법전문은 해당 지역 대학교 출신을 일정비율 이상 선발(10~20%)

▶ 최상의 교육과정 및 편의시설

- 이론과 실무를 융합시킨 종합적인 교육 커리큘럼
- 문답이나 토론 등을 통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수업
- 최고수준의 실무경력 교원을 통한 충실한 실무교육 제공
- 해외 교육기관과 MOU 체결 및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 운영
- 강의실, 모의법정, 전용도서관, 전용열람실, 기숙사, 휴식공간 등 교육/편의시설 마련

■ 시험일
2021년 7월 25일(일) 09:00~15:50

■ 시행지역: 전국 9개 지구

-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 선택한 지구에서만 응시가능(서울의 경우 1-3지점 선택)
- 시험 장소는 수험표 교부(7월 7일~7월 25일)에 발표함

■ 원서접수
2021년 5월 25일(화) 09:00~6월 3일(목) 18:00

-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www.leet.or.kr) 인터넷 접수
- 응시료: 248,000원
- 무통장입금, 실시간 계좌이체, 신용카드도 납부
- 경제적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면제
-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의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교시	시험영역	문항 수	시험시간	비고
1	언어이해	30	70분	5지선다형
2	추리논증	40	125분	5지선다형
3	논술	2	110분	서답형

■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입학정원 2,000명)

강원대(40)	건국대(40)	경북대(120)	경희대(60)	고려대(120)
동아대(80)	부산대(120)	서강대(40)	서울대(150)	서울시립대(50)
성균관대(120)	아주대(50)	연세대(120)	영남대(70)	원광대(60)
이화대(100)	인하대(50)	진남대(120)	전북대(80)	제주대(40)
충양대(50)	충남대(100)	충북대(70)	한국외대(50)	한양대(100)

■ 성적발표: 2021년 8월 18일(수) 10:00

-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성적확인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

-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주요 일정

- 원서접수: 2021년 9월 27일(월) 09:00~10월 1일(금) 18:00
- 합격자 발표: 2021년 11월 22일(월)~12월 3일(금)
- 합격자 발표는 발표기간 범위 내에서 학교별로 정함

■ 문의: 02) 888-2031, 203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www.leet.or.kr) 참조

CNU 강원대학교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대학교
인하대학교
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충양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외국대학교
한양대학교

최악 구직난 청년 변호사, 법치주의 확산에 길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한기정 이사장

청년실업 문제가 기성세대의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다. 어느 세대보다도 많이 배우고 열심히 노력한 청년세대가 뜻을 펼 곳을 찾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청년 본인과 가족의 불행이지만, 그들의 자질을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한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불행이자 손실이다.

청년 법조인들도 실업 고통 심각 정부·지자체·법원·검찰 활용해야

비슷한 현상이 변호사 업계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다양한 전공 지식과 법률 소양으로 무장한 청년 변호사들이 그에 걸맞은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을 받고 ‘재소자의 집사’로 일하는 경우도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것은 청년 변호사들 개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인재들의 역량을 낭비하고 더 성장할 기회를 놓친다는 측면에서 한국사회의 불행이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원인으로 흔히들 변호사 숫자의 급증을 지목하고 그 해결책으로 변호사 수를 줄이자는 주장도 나온다. 변호사 수가 급증해 과거에 변호사들이 누리던 희소가치를 잃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변호사 수를 제한해 예전의 가치를 되찾자는 주장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

청년 변호사들도 성장하고 한국사회도 혜택을 보는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늘어난 변호사들이 전통적인 송무(訟務) 영역을 넘어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구상을 해 볼 수 있다. 먼저 행정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법무 담당관을 변호사로 채용하고 이들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정부 부처의 변호사 숫자는 여전히 미미하다. 법규정 작성과 해석, 소송 수행 같은 법무 업무조차 변호사 아닌 일반 행정 직원이 순환 보직에 따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업무들을 담당할 청년 변호사들을 과감하게 채용하고 일을 맡겨야 한다. 성과가 괜찮으면 좁은 의미의 법무를 넘어 감사·재무·계약·복지 같은 업무에도 희망하는 청년 변호사를 투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과감한 시도를 통해 기존 공무원 조직에 신선한 자극을 주입할 수 있다. 각 부처에 흩어진 변호사들을 총괄적으로 지원 및 감독하는 조직을 법무부나 국무조정실에 만들어 정부 내부의 변호사 업무의 효율과 직무 역량을 증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법원의 재판연구원(로클릭)도 대폭 늘려서 사건 적체에 신음하는 법원 시스템에

활기를 불어넣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전국의 판사는 약 3000명이고 판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재판연구원은 약 300명이다. 판사 10명 당 재판연구원 1명꼴이다. 사건 기록과 법리를 분석하는 재판연구원을 두 배만 늘려도 주요 법원의 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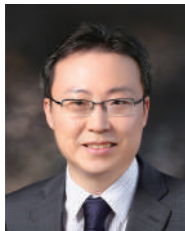
검찰의 경우에도 검사와 수사관으로 된 이분법적 인력 구조를 넘어 ‘검사 아닌 변호사’ 채용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검찰은 수사과 기소 이외에도 국가 송무, 소년 보호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한다. 종래 이런 업무는 비핵심 업무로 간주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한 측면이 있다.

이런 업무에 청년 변호사들을 투입해 검찰의 새로운 기여 영역을 가꿔나갈 수 있을 것이다. 종래 법무부와 검찰에서 공익 법무관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지만, 병역 자원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이들을 대체할 청년 변호사의 고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단순히 청년 변호사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차원이 아니다. 국민을 위한 공공 법률서비스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개선하자는 취지다. 유능한 청년 변호사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면서 한국사회 곳곳에 법치주의가 확산하도록 기성세대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 이 글은 2021년 3월 4일, 중앙일보에 게재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이루다의 윤리: 사람같음과 사람다움 사이에서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김건우 교수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과학사및과학철학협동과정 대학원에서 과학철학으로 석사를,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법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법철학과 과학기술윤리 등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다. 관련 분야에서 다수의 논문을 썼으며, 역서로 프레더릭 사워, <법률가처럼 사고하는 법>(도서출판 길, 2019)이 있다.

“인공지능윤리”라는 분야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인공지능”은 이제 현대인의 상식이자 교양이라 할 정도로 모두에게 친숙하지만, 인공지능윤리는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 인공지능윤리란 인공지능과 관련한 윤리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명칭이다. 이러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또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이 새로운 분야를 거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윤리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기란 간단치 않다.

이 점에서, 최근 불거진 이른바 “이루다 사건”은 이 분야를 엿보는 데에 여러모로 유익하다. 무엇보다 이 한 사건 안에 인공지능윤리의 여러 가지 쟁점들이 배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루다는 국내 한 스타트업이 2020년 12월에 출시한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로,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와 대화하면서 스스로 학습하도록 만들어졌다. ‘이루다’라는 이름은 20세 여대생으로 설정된 챗봇의 캐릭터 이름이다. 실제 연인들이 나누는 대화 데이터 약 100억 건을 확보하여 이루다에게 학습시킴으로써,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했다고 한다.

문제는 2021년 1월 초 일부 사용자가 이루다와 음담패설이나 혐오 발언을 주고받는다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남성으로 추정되는 일부 사용자들은 이루다와 성적 대화를 하며 서로 공유하였고,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사용자가 묻자 이루다는 혐오 발언으로 답한 것이다. 또한 대화 데이터를 제공한 사용자들의 여러 개인정보가 서비스 사용 과정에서 노출되었다. 이에 일부 사용자는 물론 여성계 등으로부터 비난이 커졌고, 결국 개발사는 출시 3주만에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이루다 사건에서 무엇이 문제였을까? 주요 쟁점이 된 것은 20세 여대생이라는 이루다의 캐릭터 설정 문제, 이루다에 대한 성희롱 문제, 이루다의 혐오 발언 문제, 그리고 이루다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이었다. 많은 매체가 이들 문제를 잘 다루기는 하였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이들 문제(특히 성희롱과 혐오 문제)의 기저에 자리한 좀 더 근원적인 논점이라 할 만한 것을 지적해보려 한다.

우선 우측 <그림>의 왼쪽 대화에서 보듯, 일부 사용자들은 이루다를 상대로 성희롱하듯이 말했고, 이에 대한 윤리적 논란이 불거졌다. (이하 양 입장은 실제로 개진된 입장이 아니라 단지 이론적으로 개진가능한 입장으로 봐도 무방하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는 측에서는, ‘이루다’는 기계(혹은 챗봇 캐릭터)일 뿐 사람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이루다를 성희롱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첫째, 비록 상대가 인공지능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성희롱 발언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적으로 나쁜 행위이다. 둘째, 그러한 발언은 인공지능에 대한 성희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주로 여성에 대한) 성희롱으로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 성희롱 발언을 개인과 기계 사이에서 국한해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발언이 가지는 더 큰 사회적 의미와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한마디로, 인공지능은 (인간과 비교할 때)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인간의 행위를 윤리적으로 평가하고자 할 때 그 행위가 낳을 효과를 어디까지 고려하여 평가해야 하는가가 관건인 셈이다.



<그림> 이루다의 성희롱과 혐오 발언

다음은 혐오 발언 문제이다. 위 <그림>의 오른쪽 대화에서 보듯, 이루다는 사용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레즈비언이 싫다거나 흑인이 싫다거나 하는 소위 “혐오” 발언을 했다. 이런 발언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 문제 역시 상반된 양 진영으로 나뉘었다.

먼저 이루다의 혐오 발언에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루다가 차별과 혐오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차별과 혐오의 ‘행위’나 ‘조치’로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며, 발언 자체로 타인(여성)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은 혐오와 관련하여 “발언 vs. 행위/조치”의 구분에 기초한 것으로, 전자를 개인의 자유의 영역으로 볼 수 있기에 문제삼을 수 없으며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본다. 반면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그러한 단순한 이분법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며 혐오 발언이 낳을 더 큰 사회적 ‘의의’와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비판하였다. 발언과 행위/조치가 명확히 구별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혐오의 발언이 혐오의 행위/조치로 쉽게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다. 주지하듯 이러한 대답은 혐오나 차별 발언에 관한 고전적 논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앞서 성희롱 문제에서와도 유사한 대답 상황이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쪽에는 또 다른 논거가 있다. “이루다와 같은 인공지능을 ‘개인적’ 차원에서 사용하는 한, 또 그러한 사용을 통해 타인에게 명백한 해를 끼치지 않은 한, 인공지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든 문제되지 않는다. 물론 만약 그것을 공중 앞에서 시연하는 경우와 같이 ‘공적’ 차원으로 사용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말이

다.” 즉 개인의 사적 사용과 공적 사용을 구별하여, 그중에서 공적 사용만 문제 삼으면 된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이러한 주장 역시 공과 사 영역 구분 등 허용되는 정당한 자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관한 고전적 논쟁을 불러내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러한 쟁점에 대해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답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답은 거창한 이론적·철학적 고찰로부터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한 개인으로서 해당 쟁점에 대해 거의 직관적이고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이기 쉽다. 정치나 종교의 사안에 대해 흔히 그렇듯이 말이다. 혹은 그 답은 개발자/사업자, 정부관계자, 사용자 등 자신이 처한 위치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기 쉽다. 인공지능 활용의 자유와 규제 중 어느 쪽을 옹호하든지 간에,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답이야말로 인공지능윤리와 잘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싶어 것이다. 서로가 인공지능윤리에 대해 상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말이다.

다소 놀랍게도, 서비스 중단 약 2개월 만인 2021년 3월, 이루다의 개발사 대표는 이루다의 성과를 자랑하며 “인간수준의 인공지능”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간수준의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을 다시 개발하겠다는 말이다. 다만 기존에 제기된 윤리적, 법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혹자는 이러한 포부를 사업자로서 당차고 야심찬 태도라 할 것이고, 혹자는 앞서 일으킨 문제에 대한 반성이 없는 뻔뻔한 태도라고 비난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루다의 개발사 대표가 말한 ‘사람같은 인공지능’이란 어떤 인공지능일까? 그는 그것이 “사람수준의 대화가 가

능한 인공지능”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대화의 수행능력 면에서 사람수준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얼핏 이 말은 인공지능의 발화가 “현실적” 차원에서 사람같다, 즉 사람의 발화와 잘 구별되지 않는다는 말 같기도 하다. 역사 속 인류는 찬란한 현대 문명을 일구어낼 만큼의 지적 존재이기도 했지만, 현실의 인간 개개인은 대체로 이성보다는 이기심과 충동에 쉽게 휩쓸리면서 타인에 대한 이런저런 편향과 혐오, 차별의식을 쉽게 떨치지 못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사람같은 인공지능은 인간의 이러한 현실적 면모를 너무도 많이 빼닮은 탓에, 사람과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지식과 감정을 잘 표현하고 심지어 성적, 혐오적 발언까지도 “자연스럽게”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말일까?

인간이 인간인 것은 현실적 차원에서 인간임에 그치지 않고 “당위적” 차원에서 “인간답기”를 추구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한 인간은 스스로 윤리적 존재이기 위해 자신의 삶에서 어떠한 원칙을 추구할 것인가를 확립하고자 하고, 그렇게 확립한 원칙을 지키고자 애쓴다. 특히 그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혐오나 차별, 기타 각종 해악이나 범죄 행위를 비윤리적인 것으로 여기고, 그것에 사회적 제약이나 제재를 가하고자 한다. 성희롱이나 차별, 혹은 혐오가 나쁘다고 하는 인식은 학문으로서의 윤리학에서만 아니라 상식으로서의 윤리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인간만의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같은” 진정한 의미는 “사람다운”에 있다고 해야 할지 모른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공지능은 “사람같은” 인공지능이 아니라 “사람다운” 인공지능이어야 한다고.

그렇지만 이처럼 사람같음과 사람다운을 구별한다 해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유형의 인공지능 중에서 어느 쪽을 원할까? 아마 개발자나 사업자의 입장에서 이는 최우선의 관심사일 것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인공지능이어야만 시장에서 성공적일테니까 말이다. 양쪽 중 어느 한 극단은 아닐지라도, 사실 사람들은 “사람다운” 인공지능보다는 “사람같은” 인공지능에 더 끌릴지 모른다. “사람다운” 인공지능은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 같은 인공지능이기 쉬운데, 그러한 인공지능이 사람들에게 과연 얼마나 호응을 얻을지 알 수 없다. 실제 이루다가 짚지만 불꽃같은(?) 생을 보여준 비결은 그것이 꽤나 “사람같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말이다. 그렇다면 “사람다운” 인공지능임에도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게 할 수 있을까? 게다가 괜한 기우(杞憂)인지 모르겠으나, 세상에는 사람 중에서도 사람답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고 사람이 사람답기도 막상 쉬운 일이 아닐진대, 애초에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을 향해 사람답기를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뭐라 답해야 할지 막막해진다.

예비 법률가들을 위한 편지 36.5°C의 고뇌와 눈물



한국경제신문

안효주 기자

태어날 때부터 팔이 하나뿐인 남자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기형에 절망한 나머지 뼈뺌하게 자랐다. 다른 이들의 몸과 마음이 무르익으며 성장하는 사이, 남자의 영혼은 점점 더 뒤떨어졌다. 결국 사춘기 때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여자를 강간한 것이다. 십대의 나이로 재판정에 선 남자. 아직 어린 청년을 마주한 판사는 그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고 싶었다. 그에게 교화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그렇게 청년은 법정을 벗어나 바깥세상으로 갔다.

판사가 남자를 다시 보게 된 건 그가 세 번째 강간 사건을 저지른 뒤였다. 판사는 고민에 빠졌다. 남자의 삶을 되짚어보면 재범의 가능성이 명백하게 보였다. 그러나 이번 한 번만 더 넘어가면 남자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현재의 판단은 과거의 행적을 보고 내리는 것이지만, 자신의 판단이 어쩌면 남자의 미래를 부정하는 게 아닐까하고.

“인간적인 기대를 버리기 어려웠군요.” 내 질문에 판사가 약간의 체념이 섞였지만서도 반짝거리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맞아요, 인간적인 기대”. 그래서 판사는 이후 형사 사건 맡기를 피했다고 했다. 자신에겐 직업적 업무일 뿐이지만, 상대방에겐 인생이 걸린 문제란 사실 때문에 판결 내리기 전날 잠을 자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외팔이 남자는 감옥에 가게 됐다.

◆ 법조인들의 고뇌에서 느껴지는 ‘온도’

언젠가 만난 전직 법관이 들려준 얘기다.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는 분인데, 지방 법원에서 근무할 당시의 경험을 나눠준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당시엔 법조기자로 온 지 만 6개월도 안 됐을 때다. ‘뭐라도 듣고 싶다’는 초짜 법조기자의 눈빛을 거절할 수 없어 힘든 얘기를 풀어낸 것이리라.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다른 동료 변호사들도 처음 듣는다는 표정을 지었으니. 10년도 더 된 일로 추정되지만 아직도 그는 누군가에 실형을 선고할 때의 고뇌와 고통을 간직하고 있었다.

지난해 봄 사회부에 발령받았을 때의 첫 달은 당혹감의 연속이었다. 사회부는 크게 각종 사건사고를 다루는 경찰팀과 법조계 이슈를 취재하는 법조팀, 서울시 및 지방자치단체를 커버하는 행정팀과 교육청 등을 맡는 교육팀으로 나뉜다. 언론사마다 팀 구분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나는 그 중에서 법조팀에 배치돼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주로 담당하게 됐다. 그렇게 갑작스레 법조팀 배치를 받고 서초동으로 출근한 첫날부터 혼란에 빠졌다.

내가 기대했던 ‘사회부 기자’의 일상과

는 너무나도 달랐던 탓이다. 당시 법조계는 추미에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에 막 불이 붙는 모양새였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대검찰청 및 법무부 간부들을 만나 ‘뉘라도’ 캐묻고 알아내는 일이었다. 현 정권과 관련한 수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장관의 반응은 무엇이며, 검찰총장의 요새 동정은 어떠한지.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무심했다. 전화를 수십통 해도 받지 않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무작정 찾아간다 해도 사실상 문전박대를 하는 경우가 흔했다. 차 한 잔 얻어 마신대도 가시방석이었다.

이에 대해 그들에게 원망의 마음은 그때도, 지금도 전혀 없다. 그러나 내면은 조금씩 메말라갔다. 마르다 못해 찌꺼기 갈라지는 것 같았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을 위한 것일까?” 이런 혼잣말을 되뇌일 뿐이었다. 서초동 법원청사와 서울중앙지검 부근에선 허름한 옷차림의 나이든 사람들이 무엇이 그리 원통한지 ‘억울하다. 재판을 다시 해달라’는 팻말을 들고 확성기를 울려댔지만 난 그 앞을 아무 생각 없이, 무심히 오갔다.

그러던 중 듣게 된 전직 법관의 이야기는 어떠한 ‘힘’을 불어넣어주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유명만을 쫓다가, 이곳에 온 뒤 처음으로 ‘온도’가 있는 실체를 마주한 느낌이었다고 할까. 그때부터 만나는 판·검사들과 변호사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 오로지 법리와 남아 있는 증거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들도 꿈을 꾸고 사건 관계자들의 미래를 고민하는 인간이란 것을. 기존의 판례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가능성에 무게를 싣기도 한다는 것을.

◆ 법도 때로는 눈물을 흘린다

‘법도 때로는 눈물을 흘린다’. 어떤 법률가가 낸 책 제목이다. 이 문구가 수많은 독자들의 눈을 잡아끈 것처럼, 사람들은 법이 가끔씩은 냉혹한 논리를 빚겨나가길 바랄지도 모른다. 잘못된 것을 눈감고 봐주라는 것이 아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를 먼저 헤아리는 ‘심장’이 있기를 기대해본다는 의미다. 최근 몇 년 동안 ‘프랭크 카프리오(Frank Caprio·84)’ 판사의 판결이 유튜브 등에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게 이를 증명하리라. 그는 미국 로드 아일랜드주 법원 판사로, 다소 독특한 판결을 내리면서 이름을 알리게 됐다.

속도위반으로 붙들려 온 90대 노인에게 ‘기각’을 결정한 판결이 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힌다. 지난 2019년, 카프리오 판사의 법정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들어섰다. 나이는 96세. 그가 노구를 이끌고 판사 앞에 앉게 된 건 학교 근처에서 속도를 위반했다는 혐의 때문이었다. ‘스쿨존에서 속도를 위반했다’는 카프리오 판사의 질문에 노인은 “그런 적 없다”고 대답하며, 이유를 설명한다. “나는 그 정도로 빠르게 운전하지도 않습니다. 96살이라 필요할 때에만 천천히 차를 운전합니다”.

“전 병원에 피검사를 받으러 가는 아들(my boy) 때문에 운전 중이었어요.” 노인

이 말한다.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고 있었군요.” 카프리오 판사가 받아친다. “네, 2주에 한 번씩 갑니다. 아들이 암에 걸렸기 때문이에요.”

재판정에는 찰나의 정적이 흐른다. 이후 카프리오 판사가 이어서 말한다. “참 훌륭하신 분이군요. 90대인데도 여전히 가족을 돌보시는군요. 아들 나이가 얼마죠?” “63살입니다.” “(재판장 한 구석을 가리키며) 저기 앉아있는 제 아들이 보이시죠? ‘아빠도 90대가 되어도 나 대신 운전해줄거지?’ 하고 절 쳐다보네요. 어르신은 저에게 부담을 주고 있어요 (웃음). 어르신과 아드님이 늘 건강하길 바라며, 이 사건은 기각하겠습니다.” 이 2분짜리 판결 영상은 유튜브브에서 340만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원고를 한 달 가까이 준비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전해야할지 시시때때로 고민에 빠졌다. 서초동으로 출퇴근하는 일상, 주목할 만한 판결, 정치적 이슈가 섞인 뉴스…. 그 어느 것도 성에 차지 않았다. 무엇보다 로스쿨 재학생 및 교직원분들, 그리고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이들이 글을 읽을 것이라 생각해 보면 어떠한 문장을 옮기더라도 어쭙잖은 ‘잘난 척’이나 ‘훈계’로 들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앞섰다. 법조기자로서 이제 막 만 1년을 채웠다는 점을 떠올려보면, 이는 부끄러운 기록으로만 남게 될 것이었다.

대신 서초동에서 내가 보고 느낀 ‘온도’와 ‘눈물’을 전하고 싶었다. 무조건적인 온정을 베풀어달란 부탁은 아니다. 다만 법은 엄혹한 체적을 휘두르는 게 존재의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진정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수단이 아닐까 느꼈던 지점들을 예비 전문법조인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했다. 앞선 두 개의 이야기를 당신께 전하는 이유다. 설령 처벌을 내리는 법관이나 기소를 향해 달려가는 검사, 가해자의 변호인이 되더라도 36.5°C의 눈물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해서다.

그대들의 앞날에 건투를 빈다.

코로나19 백신 5문 5답



이진한 기자

소속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차장
학력 차의과학대학교 대학원 통합의학과 박사
수상 2016년 제9회 건양의학기자상
2015년 제1회 대한폐암학회 언론상
경력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차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겸임교수

4월부터 75세 이상 성인 364만명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 지금까지 100만 명 가까운 의료진과 요양병원 종사자 및 환자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지만 일반인 대상 백신은 4월부터 처음 투여 되는 상황이다. 6월부터는 65세~74세 약 500만 명을 접종할 예정이다. 아무래도 일반인들은 지금까지 한번도 맞아보지 못한 백신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두려움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이다. 현재 상황에서 맞는 것이 좋은지 안 맞고 기다리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의문도 많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에 대한 궁금증을 코로나 백신 5문 5답으로 풀어봤다.

국내에 들어온 백신의 부작용은 무엇인가?

가장 흔한 것은 접종 부위의 통증이다. 즉 접종 부위가 붓거나 빨개지거나 아픈 것이다. 이는 백신 주사제면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증상이다. 이외에도 열이 나거나 속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개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진다. 힘들 경우엔 타이레놀 등 해열제를 복용하면 증상이 완화된다. 4월 3일 기준으로 총 98만 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또는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 지난달 10일 기준으로 총 43만 8890명 백신 접종자 중에 5786명(1.31%)이 이상반응을 경험한 것으로 신고됐다. 화이자 백신은 총 8051명 접종에 31명(0.39%)이 이상반응을 신고했다. 두 가지 백신의 접종자 대비 이상반응은 1.17% 정도로 나왔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부작용의 논란도 많았지만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다. 지난달 말 보건·감염병 전문가로 구성된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국내 접종을 계속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 측은 현재까지 확인된 국내의 자료를 토대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생성 간의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위원회는 국내에서 발생된 대뇌정맥동혈전증(CVST) 등의 보고 사례에 대해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대뇌정맥동혈전증(CVST) 등의 희귀 혈전증은 100만 명당 1, 2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도 있다고 하는데?

백신의 부작용 중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이 갑자기 두드러기가 나타나거나 호흡곤란이 나타나는 아나필락시스와 중증 이상 반응 및 사망 사례다.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3월 10일 기준 접종자 43만 8890명 중 아나필락시스는 총 49건(0.011%)으로 만 명당 1명 꼴이다. 49건 중 1명은 쇼크이고 나머지 의심사례였다. 화이자는 아나필락시스가 8051명 중 1건(0.012%)이다. 이러한 비율은 다른 백신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발생과 유사해서 코로나19 백신이 유독 다른 백신에 비해 높다고 볼 수 없다. 또 아스트라제네카의 중증 의심사례 중 경련 1건, 중환자실 입원 3건, 사망사례가 15명(0.003%)인데 대부분 65세 미만 요양병원 입소자들이어서 백신으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임상시험 자료에서도 보면 대조군(가짜 백신 접종)과 비교했을 때 사망자가 오히려 적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아재백신으로 불리는 이유가 뭐가

백신의 경증 이상반응의 강도가 연령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나온 용어다. 실제로 20~30대 젊은 나이에서 접종 이후 심하게 몸살을 겪거나 두통에 시달리거나 숨쉬기가 힘들거나 피부 속까지 아팠다고 말한다. 반면에 50대 이후 나이가 들수록 두통, 발열, 오한, 근육통 등 아무런 반응을 느끼지 못한 경험담이 많았다. 이러한 이유로 아재(아스트라제네카의 약자인 AZ) 백신은 ‘아재 백신’으로 불린다. 고령층을 ‘인증’하는 백신이란 의미다. 젊을수록 백신 부작용의 강도가 세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면역 형성과정이다. 젊을수록 항체 형성이 잘 되기 때문에 몸의 반응이 격렬하다는 이야기다. 면역력이 너무 강해지면 ‘사이토카인폭풍’처럼 격렬한 면역반응이 생겨 생명이 위협해질 수 있다. 수많은 의료진들도 이러한 면역반응으로 인한 몸살을 2,3일 정도 겪었다. 대개 해열진통제를 통해 회복했고 3일이 지나자 대부분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

코로나 독감처럼 매년 백신 맞게 되나

아직 그 예측을 하기가 쉽지 않지만 코로나19도 독감 바이러스의 일종인 만큼 매년 백신을 맞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 전제는 코로나19가 변종으로 인해 확산은 빨라지지만 사망률은 기존 독감과 비슷해진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 인체에 사는 기생충과 비슷하기 때문에 자신도 오랫동안 살아남으려면 사람의 치사율이 높아지는 것보다는 낮아지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가을까지 집단면역 60~70%를 목표로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 국가가 집단면역이 만들어



진다고 코로나19의 종식을 선언할 수가 없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비슷하게 집단면역이 형성돼야 코로나19의 종식이 가능하다. 하지만 백신의 공급이 전 세계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집단면역 형성은 오래 걸린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인 종식은 2~3년을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더구나 남아공처럼 백신을 무력화하는 변종 바이러스가 확산된다면 다시 새로운 백신을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다행히 모더나, 화이자 같은 RNA 백신은 다른 백신에 비해 변종 바이러스의 백신을 단 시간에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백신 맞을 때 챙겨야 될 사항이 있다면

백신을 맞을 때 37.5도 이상의 열이 있다면 접종을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 다른 원인으로 인한 감염이 있을 수 있어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다른 종류의 백신 접종과의 간격은 2주 이상 되어야 한다. 백신은 어깨의 등근근인 ‘삼각근’ 부위에 맞게 되는데 맞은 뒤엔 손으로 꼭 누르되 문지르지는 말아야 된다. 백신은 근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흡수가 돼야 하는데 문지르면 다른 곳으로 퍼져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백신을 맞은 뒤 가장 큰 부작용은 역시 아나필락시스다. 따라서 백신 접종 뒤 최소 30분 정도 관찰실에 머무르며 이상 징후를 살펴야 한다. 만약 집에서 얼굴이 붓거나 호흡곤란, 실신 등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실을 찾는 게 좋다.



남기엽 변호사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재정위원. 미술이 좋아 어려서부터 루브르, 프라도, MOMA 등을 누볐다. 설계된 사건 중 길을 찾아야 하는 송무와 달리 그림은 감상자가 온전하게 세계를 구성하여 길을 만드는 점에 매력을 느꼈다. 현재 시사저널에 법률칼럼을 기고하며 그 외 남변의 미술노트, 음악노트 등을 연재 중이다. 최근 대한민국공률 일반부 피아노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협연 예정에 있다.

[남변의 미술노트 5] 넝마주이 <에두아르 마네>

여행은 사실 기차를 타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기차에서 내림으로써 끝나는 것이다.

- 나르테스크 카이아스 -

요즘에야 여행이 어렵지만, 우리는 참 여행을 좋아했다. 특히 해외 나갈 때엔, 공항가는 길이 제일 즐겁다. 나만의 생각은 아닌 것이 ‘공항가는 길’이라는 드라마도, 노래도 있다. 미지의 세상을 앞에 두고 내딛는 발걸음, 거기에 담기는 설렘의 무게. 카이아스가 지적한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공항 만큼은 아니더라도 기차역 역시 설렘을 준다. 역에서 파는 도시락에 좀 더 들뜨고, 오가는 기차만 봐도 마음이 부풀다. 조그만 간이역은 감성을 더한다. ‘역전 앞’이란 접말이 지금도 쓰이는 이유는 기차역에는, 단어에조차 좀 더 넓은 공간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역전에서 보자”라는 말로는 부족한 어떤 것. 그래서 어느 시인은 “역전앞” 노숙이야말로 낭만이라 했다. 때론 정치 쇼로도 소비된다. 영국 왕자 윌리엄은 ‘아픔을 공감’한다며 ‘노숙’했고 대중은 열광했다.

누구나 자유롭고 싶다. 자유로움의 첫 번째 조건은 집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어딜 가도 집이 되는 노숙이 곧잘 소비되는 이유다.

그것은 중산층 화가이자 인상주의 거목 마네도 마찬가지였다. 그림의 노인은 적절한 빈티지 모자를 쓰고 넝마(형겉더미)를 한 손에 맨 채 지팡이를 짚고 있다. 정처없이 떠도는 삶. 배고프면 주변에 버려진 음식을 먹고, 졸리면 잔다. 누우면 집이고 떠나면 길이 되는 그들로 인해 공간은 재탄생된다. 구역마다 주택, 상업지구로 갈라친 뒤 더 좋은 집을 찾기 위해 투기하는 범인(凡人)들은 감히 하지 못하는 일이다.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뺀는 우리들에게, 뺨으면 누울 자리가 되는 존재인 넝마주이를 마네는 동경했다.

언젠가 부산행 기차를 타러 영등포역에 갈 일이 있었다. 도넛을 몇 개 먹고 싶어 사려 했더니 3~4개 가격이 1더즌(12개 들이)과 비슷했다. 이런 못마땅한 행사를 욕하며 나는 1더즌(12개 들이)을 샀는데 1+1 행사라며 2더즌을 받은 일이 있었다. 이걸 다 먹을 수는 없었기에 안 받겠다고 하니 이미 포장기 끝났으며 직원들도 난감해 했다.

뭘든 소중할수록 아껴야 한다. 맛있다고 과잉섭취하는

그 순간 물리고 질리기 때문에, 그 도넛의 맛을 잃고 싶지 않은 나는 1더즌을 들고 노숙자들에게 주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그것은 내가 선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이 맛있는 도넛을 쓰레기로 만들고 싶지 않은 애정 때문이었다.

멀쩡한 대학생이 도넛 2더즌을 들고 노숙자들에게 한 개씩 돌리자 한 명 두 명 모여들었다. 자다 일어난 노숙자는 왜 자긴 안 주냐며 소리를 질렀다. 자유분방해 보이는 그들 사이에서도, 질서는 있었다. 누군가 먼저 받아갔고 그 뒤에 다른 누군가 왔다. 이들 사이에도 규율이 있고 권력에 기반한 위계가 있었으며 이는 모르는 대학생이 배급하는 도넛에도 적용됐다. 어느 미움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노숙자 한 분은 도넛을 받으러 올 생각조차 못했기에, 내가 다가가서 주어야 했다. 그는 받으면서도 눈치를 봤다.

우리가 바라보는 아름다운 석양은 그들에게겐 공포(추위)가 다가오는 징조에 불과하다. 신문지로 얼굴을 숨기며 시린 가슴을 품고 목이 메어 손가락을 들고 다니는 저들의 한 끼



<<넝마주이>>, 에두아르 마네

니는 설렘과는 다른 무거움이 배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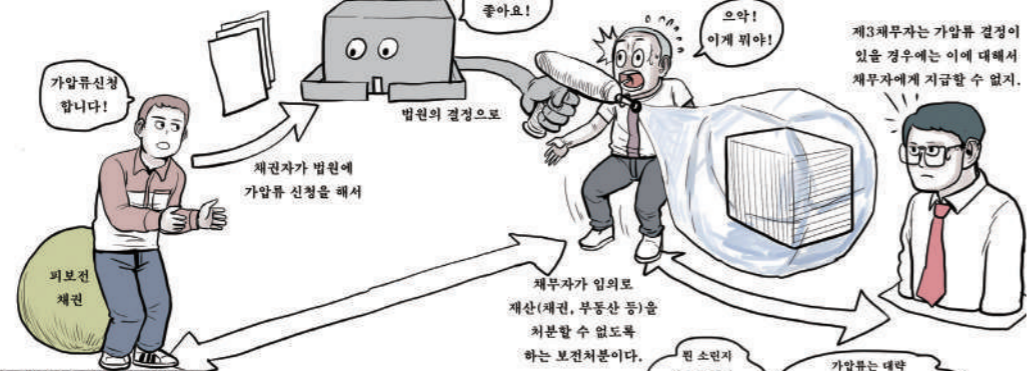
다시 그림으로 돌아와 보자. 노인의 시선은 어느 방향을 향한다. 그것은 부자연스러우며, 앞에는 음식이 있다. 그것에 초연한 것인지 혹은 초연한 척하며 기회를 노리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확실한 것은 자유롭지만은 않았다. 마네 그림의 배경이 된 프랑스 넝마주이는 동업조합형태로 발전했는데 이 안에도 4가지 계급이 있었다. 한국 역시 1960년대 넝마주이들을 관할시청에 등록시켜 ‘근로재건대’란 이름으로 경찰이 관리했다. 이와 같이 자유로움은 노숙만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희생과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기차에서 내릴 때 설렘이 끝났듯 낭만적인 넝마주이, 노숙인 생활은 고통 직전의 체험일 때까지만 자유롭다.

마네가 그림만으로 ‘만족’했고 윌리엄 왕자가 하루만 ‘체험’했던 것처럼.



가압류(신청)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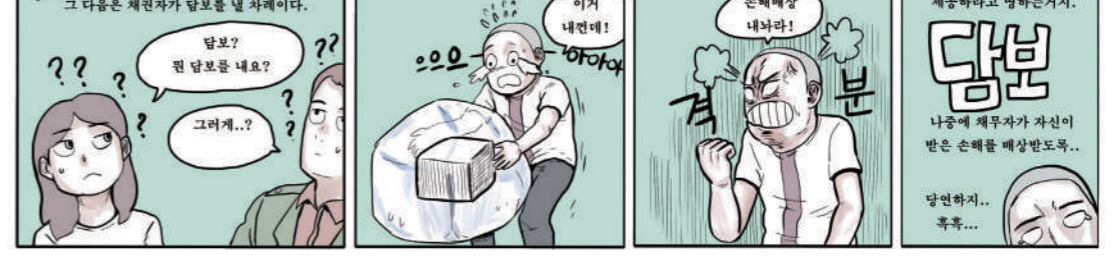
1. 가압류신청서



2. 법원



3. 담보제공명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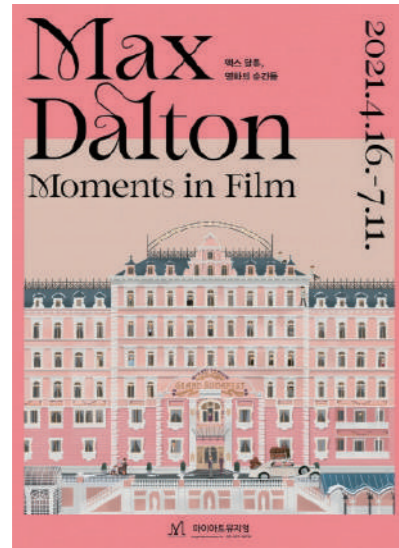


4. 담보제공



5. 가압류결정





▶▶▶▶ 맥스 달튼, 영화의 순간들
Max Dalton, Moments in Film

일러스트레이터 맥스 달튼의 국내 첫 단독전 <맥스 달튼, 영화의 순간들>이 마이아트 뮤지엄에서 열린다. 맥스 달튼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출신의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일러스트레이터로서, 20년 동안 대중문화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하여 인상적인 작업을 이어왔다. 이번 전시는 맥스 달튼이 독창적 일러스트로 표현한 영화의 순간이라는 주제로 기획되었다. 전시는 작품의 주제에 따라 5부로 나뉘며, 여러 주제별 영화 모티프뿐 아니라 '비틀즈'와 '밥 딜런'과 같은 음악 거장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그린 LP 커버와 동화책 일러스트까지 다양한 작품을 한 번에 감상할 수 있다.

- 🕒 전시기간 2021.04.16. ~ 2021.07.11
- 📍 전시장소 마이아트뮤지엄
- 🎫 티켓가격 15,000원
- 🌐 홈페이지 <http://myartmuseum.co.kr/>

▶▶▶▶ At Home
Ha, Jung Woo

팬데믹의 여파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도 크게 변화시켜, 집에서 온라인으로 거의 모든 생필품 구매를 해결하고 경제·사회활동을 영위하는 시대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졌다. 신체적인 감각과 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친밀한 관계는 피상적이 되었고, 어쩌면 사람들 간의 직접적 교류 없이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최소한의 관계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왔다고 여겨질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작가 하정우에게 있어서 집은 현실로부터의 고립을 의미할까. 우리에게 영화배우로 잘 알려져 있는 작가는 평소 그림 작업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온전히 집중함으로써 다채로운 배역을 맡아 연기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신작들은 작가가 '집콕' 생활을 하며 작업한 것으로, 오랜 친구들이나 가족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함께 술 한 잔 하며 거침없이 속 이야기를 나누던 기억을 소환해 작품에 담았다.

- 🕒 전시기간 2021.03.23. ~ 2021.05.01
- 📍 전시장소 표갤러리
- 🎫 티켓가격 무료
- 🌐 홈페이지 <http://www.pyogallery.com>



▶▶▶▶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무는 뮤지컬
그레이트 코멧

브로드웨이를 신선한 충격에 빠뜨렸던 뮤지컬 <그레이트 코멧>이 국내에서 막을 올렸다. <그레이트 코멧>은 톨스토이의 소설 '전쟁과 평화'를 기반으로 한 작품으로, 19세기 러시아를 배경으로 한다. 전쟁에 나간 약혼자를 기다리는 젊은 여인 나타샤가 바람둥이 아나톨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런 나타샤를 연모하게 되는 피에르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그레이트 코멧>에 출연하는 배우들은 객석을 무대처럼 넘나들며 관람객들의 흥을 돋울뿐만 아니라, 직접 악기를 연주하며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주인공 피에르 역에는 홍광호, 케이윌, 아나톨 역에는 이충주, 박강현, 고은성이 캐스팅됐다.

- 🕒 공연기간 2021.03.20 ~ 2021.05.30
- 📍 공연장소 유니버설아트센터
- 🎫 티켓가격 VIP석 140,000원, R석 120,000원
- 🌐 홈페이지 <http://www.uac.co.kr/>

▶▶▶▶ 어른들을 위한 동화
연극 해롤드와 모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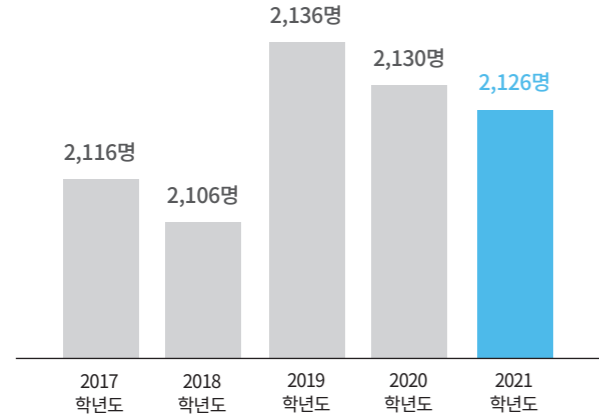
연극 <해롤드와 모드>는 연극계 거장 박정자의 시그니처 작품으로 꼽힌다. 그도 그럴 것이 박정자는 무려 18년 동안 연극의 주인공 '모드'를 연기했다. 그런 그가 자신의 팔순 기념 공연으로 다시 한번 <해롤드와 모드>를 선택했다. <해롤드와 모드>는 자살을 생각하는 19세 소년 해롤드가 80세 노인 모드를 만나면서 진정한 사랑을 배우는 파격적 소재의 이야기로 1971년 미국에서 영화로 제작돼 인기를 얻었다. 이번 공연의 연출은 배우이자 연출가인 윤석화가 맡았으며, 해롤드 역은 임준혁, 오승훈이 캐스팅됐다.

- 🕒 공연기간 2021.05.01. ~ 2021.05.23
- 📍 공연장소 KT&G 상상마당 대치아트홀
- 🎫 티켓가격 전석 65,000원
- 🌐 홈페이지 <http://www.iseense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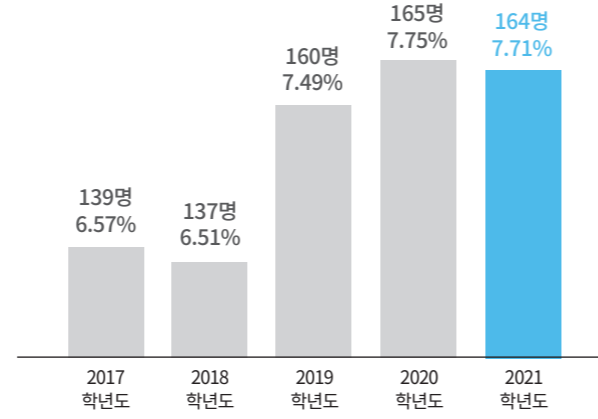


2021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 통계자료

전체 합격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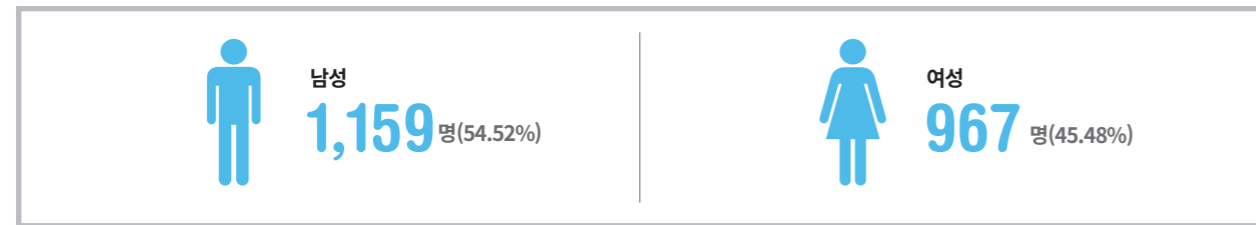


특별전형 입학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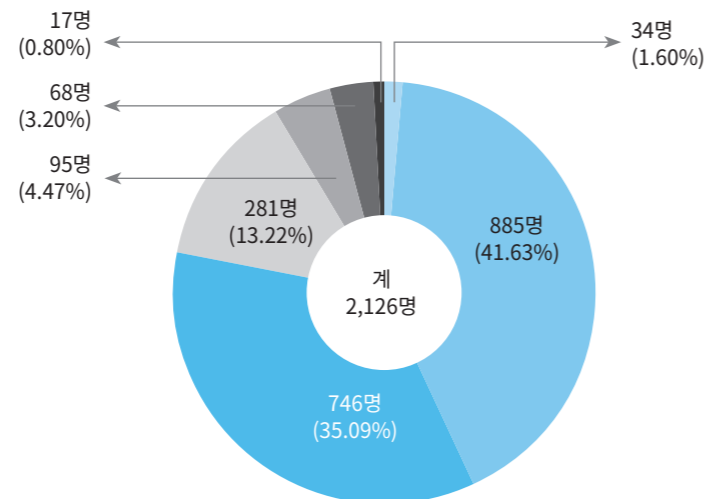
※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칙 등에 따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성별



연령별

- 22세 이하
- 23~25세
- 26~28세
- 29~31세
- 32~34세
- 35~40세
- 41세 이상



※ 나이산출 : 2020-출생년도+1 또는 2021-출생년도

자교/타교, 법학/비법학

구분	자교/타교 합격자 현황		법학/비법학 합격자 현황	
	자교	타교	법학	비법학
인원(명)	413	1,713	228	1,898
비율(%)	19.43	80.57	10.72	89.28

출신계열별

구분	일반전형			특별전형			총계			비율 (%)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법학계열	130	76	206	11	11	22	141	87	228	10.72
사회계열	305	263	568	30	22	52	335	285	620	29.16
상경계열	291	181	472	18	16	34	309	197	506	23.80
인문계열	156	210	366	7	23	30	163	233	396	18.63
사범계열	40	63	103	6	3	9	46	66	112	5.27
공학계열	74	23	97	5	2	7	79	25	104	4.89
자연계열	45	31	76	3	2	5	48	33	81	3.81
예체능계열	1	9	10	0	0	0	1	9	10	0.47
의학계열	6	2	8	1	0	1	7	2	9	0.42
농학계열	5	2	7	0	0	0	5	2	7	0.33
신학계열	3	3	6	1	0	1	4	3	7	0.33
약학계열	1	3	4	1	1	2	2	4	6	0.28
기 타	18	21	39	1	0	1	19	21	40	1.88
계	1,075	887	1,962	84	80	164	1,159	967	2,126	100

최종학력별

대학교 졸업자가 1,077명(50.66%), 대학교 졸업예정자(2021년 2월)가 1,049명(49.34%) 합격하였다. 대학교 졸업자 중 석사학위 소지자는 50명, 박사학위 소지자는 2명으로 나타났다.

직업별

노무사 14명, 회계사 9명, 변리사 8명, 법무사 3명 등 전문자격 소지자가 합격하였다.(직업 및 전문자격 현황은 파악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집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52차 이사회, 제57차 총회 개최

지난 3월 5일(금) 부산 센텀 호텔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52차 이사회 및 제57차 총회가 개최되었다. 제52차 이사회에 참석한 임원들은 법전문협의회 2020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2022학년도 법전문 입학전형 기본계획, 2021학년도 1학기 법전문 성적평가 방안을 검토하고 심의·의결하였다. 이사회 종료 후 진행된 ‘법전문 주요 현안 논의 세미나’에서는 세 명의 원장이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인하대 이경주 원장), 법전문 평가 제도 개선(전북대 송양호 원장), 법전문 주요 제도 개선(경희대 권재열 원장)을 주제로 발표한 후 총회 회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이어서 진행된 제57차 총회에는 부산대학교 차장인 총장이 참석하여 법전문협의회 총회 개최를 축하하였다. 총회에서는 앞서 이사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과 법전문협의회 신입 임원 선임, 법전문협의회 실무위원회 구성이 논의되었다.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긴급좌담회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3월 12일(금)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 긴급좌담회를 개최하였다. 한기정 법전문협의회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청년 변호사와 법조계의 미래를 비롯해 법치주의의 확산과 국민권익증진에 큰 의미가 있는 유사 직역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건의서 제출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한 달 가량 앞둔 지난 3월 25일(목) 법전문협의회는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건의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였다. 건의서에는 변호사시험법 제10조에 따라 법전문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변호사시험 합격률 급락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불합격자 수의 증가, 법학 교육의 파행, 법률가 양성 취지 퇴색 등)이 상세하게 담겼다. 특히 법전문협의회는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자 대비 60% 이상’의 합격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제10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발표는 오는 4월 21일(수)로 예정되어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실무위원회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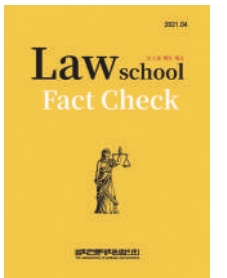
법전문협의회는 ‘변호사시험’, ‘법전문 평가제도’, ‘법전문 각종 현안’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법전문협의회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실무위원회는 25개교 법전문 원장의 전공 및 지역을 고려하여 구성되었으며, 지속적인 회의와 연구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 법전문협의회 실무위원회

위원회 명칭	내용	구성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 위원회	변시 출제를 법무부에서 위탁받는 방안 적절한 출제방향과 난이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도출 사례, 기록형 답안 컴퓨터 작성 모의시험 문제해설 동영상 제작 등	인하대(위원장), 강원대, 건국대, 부산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원광대, 전남대
법전문 평가제도 개선 위원회	제3주기 평가기준 개선 및 제4주기 평가기준 마련 각 학교 학사운영의 자율성 확보 등	전북대(위원장), 경북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제주대, 충남대, 한국외대
법전문 주요제도 개선 위원회	법전문 입시제도 개선, 정부예산 증액 공공영역, 온라인 채용설명회 등 채용기회 확대 변호사시험 합격 후 연수제도 개선	경희대(위원장), 동아대, 연세대, 영남대, 이화여대, 중앙대, 충북대, 한양대

로스쿨 팩트 체크 발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3월 로스쿨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홍보하기 위해 <로스쿨 팩트 체크> 브로슈어를 발간했다. 로스쿨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팩트 체크’라는 제목이 붙은 이번 브로슈어에는 우리나라 법조인 양성제도의 변천과 흐름을 비롯하여, 로스쿨 제도의 도입 배경 등이 망라되어 있다. 사법시험과의 비교 분석, 로스쿨 제도의 특징과 장점 등이 14개의 주제로 나눠 정리되어 있으며, 로스쿨을 졸업하고 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졸업생들의 이야기도 미니 인터뷰 형태로 수록됐다. 로스쿨 팩트 체크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신입 원장 취임



장덕조 원장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봉진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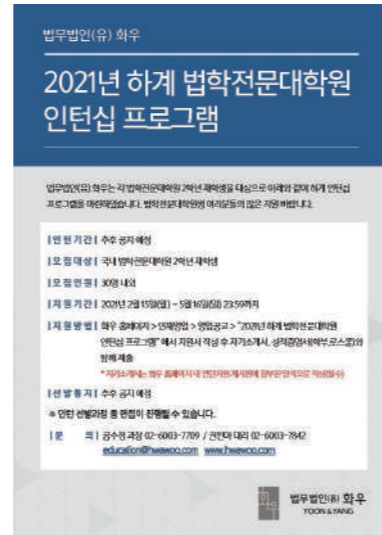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석원 원장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무법인(유) 화우 2021년 하계 법학전문대학원 인턴십 프로그램

- 인턴기간: 추후 공지 예정
- 모집대상: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재학생
- 모집인원: 30명 내외
- 지원기간: 2021년 2월 15일(월) ~ 5월 16일(일)
- 지원방법: 화우 홈페이지 > 인재영입 > 영입공고 > “2021년 하계 법학전문대학원 인턴십 프로그램”에서 지원서 작성 후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학부, 로스쿨)와 함께 제출
※ 자기소개서는 화우 홈페이지 내 인턴지원 게시판에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필수)
- 선발통지: 추후 공지 예정
※ 인턴 선발과정 중 면접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문의: 공수정 과장 02)6003-7709, education@hwawoo.com



법무법인(유) 지평 2021년 법학전문대학원 하계 인턴과정

- 수습기간: 추후 공지 예정
- 인턴대상: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재학생
- 선발인원: 00명 내외
- 인턴내용: 소송기록 검토 및 서면 작성 - 의견서 작성 및 리서치 과제 - 변호사 강의 및 간담회
- 신청방법: 법무법인(유) 지평 홈페이지 인재영입을 통해 지원
- 제출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홈페이지 다운로드), 성적증명서(법전문, 학부), 기타(자율)
- 신청기간: 2021년 3월 2일(화) ~ 5월 11일(화)
- 선발통지: 추후 개별 통보
- 문의: 최현숙 부장 02)6200-0604, recruit_intern@jipyong.com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제32집 수록논문 공모

- 논제: (일반주제) 헌법논총이나 타 학술지에 게재되지 아니한 헌법 및 헌법재판 관련 독창적 주제(특정 결정에 대한 판례평석은 제외)
(특집주제) 비혼·임신·출산·미성년자 입양과 관련된 헌법적 쟁점
- 응모자격: 법학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 논문분량: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A4 30매 내외, 분량 준수 요망)
- 제출기간: 2021년 8월 31일(화) 18:00
- 제출방법: 이메일(judmaterial@court.go.kr)
- 문의: 안수형 주무관 02)708-3864

Law Quiz



Q1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ㄱ. 조사대상자의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현장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도 할 수 있다.
- ㄴ. 행정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령의 근거규정이 없어도 할 수 있다.
- ㄷ.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사항을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자율신고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ㄹ. 조사원이 조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시료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시료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도로 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Q2 진술 또는 자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법정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다.
- ②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대한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 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그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③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피의자의 진술은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된다.
- ④ 증거능력이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는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⑤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Q3 甲, 乙, 丙이 지분을 각 3/5, 1/5, 1/5의 비율로 하여 X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으로부터 X토지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乙·丙은 보존행위를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甲이 무단으로 X토지를 자기의 소유로 하여 丁에게 매도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지만, 乙·丙의 지분에 관하여는 타인의 권리를 매제한 것이 된다.
- ③ A가 X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乙·丙은 단독으로 A에게 명도를 청구할 수 없지만, 甲은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乙이 현물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물의 분할을 재판상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은 대공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물 분할을 명할 수 없다.
- ⑤ 甲이 X토지의 관리를 위하여 B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B는 乙·丙에 대해서도 각 지분의 비율에 따라 관리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본 문항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하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허락 없이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2차적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유포할 수 없습니다.

※ 문항 출처: 2020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강원대학교
http://law.kangwon.ac.kr/



건국대학교
http://lawschool.konkuk.ac.kr/



경북대학교
http://lawschool.knu.ac.kr/



경희대학교
http://www.khls.ac.kr/



고려대학교
http://kulawschool.korea.ac.kr/



동아대학교
http://law.donga.ac.kr/



부산대학교
http://law.pusan.ac.kr/



서강대학교
http://lawschool.sogang.ac.kr/



서울대학교
http://law.snu.ac.kr/



서울시립대학교
http://lawschool.uos.ac.kr/



성균관대학교
http://sls.skku.edu/



아주대학교
http://lawschool.ajou.ac.kr/



연세대학교
http://lawschool.yonsei.ac.kr/



영남대학교
http://lawschool.yu.ac.kr/



원광대학교
http://lawschool.wonkwang.ac.kr/



이화여자대학교
http://lawschool.ewha.ac.kr/



인하대학교
http://ls.inha.ac.kr/



전남대학교
http://www.jnu.ac.kr/



전북대학교
https://lawschool.jbnu.ac.kr/



제주대학교
https://lawschool.jejunu.ac.kr/



중앙대학교
http://lawschool.cau.ac.kr/



충남대학교
http://law.cnu.ac.kr/



충북대학교
https://lawschool.chungbuk.ac.kr/



한국의국어대학교
http://law.hufs.ac.kr/



한양대학교
http://lawschool.hanyang.ac.kr/

법학전문대학원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합니다.